

# 북한인권백서 1998

인쇄/1997년 12월 27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북한인권정보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2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

ISBN 89-87509-28-1

7,000원

# 북한인권백서

1998

**민족통일연구원**

최 의 철(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송 정 호(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서 문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이며, 인권보호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확대하는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였지만 인권의 신장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인간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투쟁을 계속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신장시켜 왔다. 20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노동자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동구 및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인권문제에 대한 좌·우이념의 편견 극복과 인권 범주의 확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권의 발전과정에서 유엔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마련하고자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1945)과 「국제인권규약」(1966년 채택, 1976년 발효)을 마련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규로서 인권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 놓았고, 이를 기초로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의 발전추세는 인권문제를 국가의 배타적 권리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사고를 수정하고 인류공동의 과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제차원의 인권침해행위는 이제 모든 인류의 정당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보장의 세계사적 흐름과 국제적 조류를 무시하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념하에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일인 독재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

으로 유린하여 왔다. 현재까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지 못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점차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당원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수립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연례보고서인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98 북한인권백서」는 국제인권규약의 인권보호 기준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을 정리·분석하였다.

본 백서는 많은 귀순자 인터뷰와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으나, 자료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 장애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남북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사계의 전문학자들과 통일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8. 1.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丁世鉉

# 목 차

I. 개 관 .....	1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	1
2. 1997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 .....	6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	15
1. 생명권 .....	15
2. 평등권 .....	31
3. 자유권 .....	46
4. 참정권 .....	68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	72
1. 생존권 .....	72
2. 사회보장권 .....	83
3. 환경권 .....	87
4. 소유권 .....	93
5. 근로권·휴식권 .....	96
6. 직업선택의 자유 .....	99
7. 교육을 받을 권리 .....	101

<b>IV.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b> .....	106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	106
2. 남북억류자 실태 .....	122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	124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132
<부록> .....	143



## 도 표 목 차

<표 2-1-1> 북한의 구금형태 .....	28
<표 2-2-1> 주민성분 조사사업 .....	34
<표 2-2-2>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	35
<표 2-2-3> 성분 분류표 .....	37
<표 2-2-4> 복잡계층 분류표 .....	38
<표 3-1-1> 1인당 1일 식량배급표 .....	74
<표 3-1-2> 통일원·WFP/FAO 북한 식량수급 평가 .....	77
<표 3-1-3> 기타 추정 주체별 북한 식량수급 평가 .....	78
<표 3-1-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1998.1.9 현재) .....	80
<표 3-1-5> 한국의 대북지원(1995.6~98.1.9) .....	81
<표 3-2-1> 북한의 의료시설 규모 .....	86
<표 4-1-1> 해산된 수용소 .....	111
<표 5-3-1> 북송교포 연도별 추이 .....	126
<그림 4-1-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	111
<그림 4-1-2> 수용소 조직표 .....	114

## I. 개 관

###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통치이념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북한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령과 당의 영도에 의한 사회주의 완성에 있고, 이와 같은 목적은 주체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로서 수령과 당의 영도가 강조되는 일당독재체제이며,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과 노동당 우위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가 수령에 의한 유일지배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수령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적 역할’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인 수령이 담당하고, 중추의 기능은 당이 담당하게 된다. 즉 북한은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게 되고 영

생의 자주적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중심에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그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를 말하며,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으로서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된다. 곧 당과 수령의 지도하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그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때에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령론에 기초하여 수령에 대한 개인들의 생활수칙을 성문화한 것이 1974년 마련된 이른바 ‘10계명’으로 불리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이다. 10대원칙은 강요된 사회규범으로 주민의 사상은 물론 주민생활까지도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10대원칙은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및 수령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10대원칙에 따라 수령을 비방하는 행위는 수령에 대한 모독,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가장 극악한 정치적 처벌을 받게 된다. 10대원칙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와 부자세습체제 정당화 실패는 북한이 1997년부터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 연호를 사용기로 결정한 데서도 알 수 있다.

## 북한의 인권개념과 특징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북한의 인권개념 및 정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라는 규정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계급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계급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의식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1995.6.24)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글에서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계급적 원수’ 또는 ‘적대분자’로 규정하여 철저히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박탈되고 이들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둘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철저히 의존한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10대원칙'을 만들었다. '10대원칙'은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서 인권보장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 "집단주의는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제82조)고 규정한 북한헌법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996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대표는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집단의 인권을 떠난 개인의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개인이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며, 개인이 '계급적' 집단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인권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인민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해서 집단의 구성원은 소속집단 또는 그 집단의 대표인 수령(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경우에만 제한적이거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 및 정권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모든 법의 기본권도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수령과 당의 주민에 대한 시혜를 강조한다. 즉 북한은 '인덕정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문제를 인덕정치의 부재로 설명한다. 북한은 『로동신문』(1995.6.24)에서 인덕

정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정치는 인덕정치이다. 인덕정치는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믿음의 힘으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참된 삶을 누리게 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정치이다.

북한의 인덕정치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령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실시하는 모든 정치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최고지도자의 시혜가 어떤 법적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국제규범은 통할 수 없다.

여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권 일반이 보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은 개인의 신체적 보호나 자유로운 활동과 관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행복추구’ 등과 관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를 주권침해 내지는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세계가 주장하는 ‘개발권’(the right to development)과 인권의 상대주의(relativism)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즉 북한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경제발전 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렵다는 개발권 논리에 편승하고 있으며,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사항으로서 “매개 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제도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나라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의 상대주의 논리를 펴고 있다.

## 2. 1997년도 북한인권상황 개요

###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997년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계속되는 경제난, 특히 식량난의 지속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당국은 경제난 악화로 인한 사회일탈행위 증가를 막기 위해 경제범들조차 본보기로 공개처형시켰으며, 정치범뿐만 아니라 구금중인 범죄용의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계속하였다.

계급에 따른 성분차별,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통제, 자유로운 참정권의 제한 등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억압되었다. 식량배급의 감소·중단 등으로 식량확보를 위한 거주이동 및 직장이탈 등이 증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다.

경제난·식량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억압을 통한 체제유지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식량을 구입하고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한층 고조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나 월경 및 망명을 시도하는 행위를 형법에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왔다. 특히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인 공개처형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극악한 방법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하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97년도에도 공개처형은 폐지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불법구금과 고문 역시 계속되었다. '관리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물론 일반 '교화소'의 경제사범들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인 예심기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였으며, 예비·미수범은 기수범과, 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았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예심원이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정치범 혐의자들을 단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행해졌다.

북한은 1987년에 형법,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를 꾀하였으나 여전히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기관과 변호사는 당과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주민 정치사업을 주요 임무로 수행했을 뿐 개인의 인권보호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1997.4 입국)에 의하면, 오히려 각 단위마다 설치된 비정규적 사회통제기구인 '법무생활지도위원회'(1982.12 설치)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경제난 악화에 따른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주민뿐만 아니라 지도층인사들까지 지속적으로 통제해 왔다.

1997년도에도 북한당국은 10대원칙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초상화모시기' 사업의 하나로 선박조난과 같은 사건 발생시에도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였다.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때문에 성분차별 등 평등권의 침해정책은 구조적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복잡군중들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실시하여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사회적으로 차별하였다. 1993년부터 김정일은 성분차별의 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전개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에게 적용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분기별로 성분심사를 실시하여 일반주민들을 관리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도 지속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는 식량난과 결부되어 가정불화·이혼 등에 의한 가족해체, 부랑아(꽃제비), 매춘 및 중국으로의 여성 인신매매 등을 증가시켰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여행증 발급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였다. 물론 1997년도에도 식량난의 악화로 인한 불법적인 이동 현상은 지속되었으나, 합법적인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었다. 또한 정치적 불신자 및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의 주민들을 강제로 집단이주시키는 조치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북한당국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사상·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및 권리를 여전히 보장하지 않았다. 언론·출판물은 사상교양의 전달과 대중선동의 수단으로만 인정되었고, 모든 출판물은 노동당에 의해 검열·통제되었다. 신문의 제1면에는 항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만이 게재되었고,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권의 침해 등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는 게재되지 못하였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를 위해 정부가 조직한 각종 사회단체 이외의 사적 조직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지되었다.

북한당국은 개정헌법에 신앙과 종교의식 거행 등의 자유를 규정하고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을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65조의 “누구든지 종교를 빙자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종교활동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만 허용되었고,

종교의식은 특정시기에 설립된 종교시설에서만 거행되었다.

1997년에도 북한당국은 선거를 치루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북한은 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이 의회선거에 복수후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반동'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주권기관선거에 경쟁선거와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즉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경제침체의 지속과 식량난의 악화로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화를 억제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보장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선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게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특히 인센티브 결여, 에너지난 및 농약비료 부족 등 구조적 요인과 1995~97년 홍수와 가뭄 피해로 식량생산량이 감소하고 중앙배급제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았다.

1997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려웠으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97년도 하반기 수급사정은 상반기보다 호전되었다. 통일원은 1996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69만 톤, 수요량을 570만 톤,

해외공급량을 169만 톤(교역 70만 톤, 원조 99만 톤), 순수부족량을 325만 톤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또한 통일원은 1997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48.9만 톤, 최소수요량(458g/1일/1인당)을 기준으로 총 곡물수요량을 476.4만 톤, 부족량을 127.5만 톤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반면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7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266.3만 톤, 최소수요량을 기준으로 총 곡물 수요량을 461.4만 톤, 부족량을 195.1만 톤으로 추정하였다(<표 3-1-2> 참조).

식량난의 지속으로 1997년도에 들어서도 평양 등 공급이 원활한 지역조차 수시로 하루 평균 600g이던 배급량이 최소영양공급 한계선인 458g(1,603kcal)보다 훨씬 밑도는 200g~250g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부지역은 추수기 직전인 8월~9월경에 심각한 식량부족사태를 겪었다. 또한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생필품도 1997년도에는 배당이 크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존권은 크게 악화되었다. 현재 북한당국은 많은 주민들이 기아 내지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로 숨진 사망자 수조차 집계할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기타 사회보장실태 역시 악화되었다. 귀순자들과 「국경 없는 의사회」(MSF)에 따르면, 의약품 부족, 치료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치료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치료나 수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주민들은 배급을 받기 위해 노동에 참여하였다. 북한에서 노동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법이 정한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까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또한 “8시간 일하고, 8시간 학습하고, 8시간 휴식한다”는 원칙하에 기본일과 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과 각종 학습활동에 동원되었다.

1997년도에도 직장배치는 중앙계획경제에 따라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루었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은 무시되었다. 생활필수품의 공급 조차 정부와 당이 통제하였으며, 여타 상품도 구매권 없는 구입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소유권은 철저히 제약받았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와 이념교육에 편중되었고,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인민학교 어린이조차도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

북한의 인권실태 가운데 가장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정치범수용소이다. 북한이 『로동신문』을 통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1997년도도 정치범에 대한 비인간적인 탄압은 계속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의 관할 아래 일부 탄광·산간오지에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정치범수용소는 반국가사범 또는 민족반역자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흔히 '통제구역' 혹은 '특별 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10여 개가 있으며, 이 곳에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수용소는 「승호리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위치나 비밀 탄로를 이유로 계속 이동 내지는 통폐합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체포와 심문과정은 물론 수용기간 동안 고문과 일상적인 구타, 공개처형 등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척까지도 처벌하는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채로 보위부원·경비대원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혹독한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뵘에르 리굴로(Pierre Rigoulot)는 『공산주의 흑막』(1997.11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북한노동당의 숙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두 150만 명이라고 주장하였다.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447명의 납북억류자들과 일본에서 복송된 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조직적인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당국은 체제선전을 위해 납북억류자들에게 강제로 ‘의거입북’을 자백받고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해 체제에 불만이 많은 상당수의 복송교포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상황 또한 크게 악화되어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약 1,600명의 탈북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탈북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난민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실정이다.

####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와 북한의 대응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책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며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세계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를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대외 인권의고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세계 및 한국정부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2년 평양에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적인 인권공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부재를 거듭 천명하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권압력 의도를 비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북한은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철 주제네바대사와 한승일 외교부 지도원 등 5명의 북한정부 대표단과 조선인권연구협회 김창환(NGO대표 자격)을 파견하여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박하는 한편,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되었다. 1997년 4월 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은 의장국인 네덜란드 대표의 발표를 통해 중국·아프카니스탄 등 30여 개국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EU는 북한당국이 여러 곳에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하고 수만 명의 정치범을 억류시킨 채 이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통신·여행·집회·결사 등 개인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1997년 8월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인권소위)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인권소위는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게 인권개선 노력을 요청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인권소위의 대북 결의안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압력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는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될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내 인권부재, 출소공산주의자 송환 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를 희석화하는 한편, 식량난을 앞세워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인도적 지원 관련 NGO와의 부분적 협조를 모색하면서 인권개선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외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 1. 생명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6조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당시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제정된 신 형법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고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침해하는 반국가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사회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진압 및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가한다고 설명한다. 신 형법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신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 구 형법에 근거하여 50여 종류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사상범으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와 196



7~72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분자 또는 반혁명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뻬에르 리굴로(Pierre Rigoulot)는 『공산주의 흑막』(1997.11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북한노동당의 숙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두 150만 명이라고 주장한다.

1987년 신 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한다. 사형에 해당되는 반국가범죄로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 고죄 등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애매모호하며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전복 음모 및 폭동을 부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44조)
2.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해 테러 행위를 감행한 자: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45조)
3.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자: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제47조)
4.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하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사형 또는 정상이 가벼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2조)

북한은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범과 양심수들은 단순히 이념적·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처형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관리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형판결과 집행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

은 탈북주민 처벌과 관련이 있는 북한형법 제47조가 1995년 개정되었다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통보하고도 개정된 조항의 정확한 규정에 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공개처형

북한에서의 사형은 “계급적 원수들의 더러운 운명에 최후의 종지부를 찍는 무자비한 혁명의 철추이며 계급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위력적인 법적 수단”이다. 사형의 대표적인 실시방법으로서 공개처형이 채택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시기에 따라 빈번하게 행해지며, 그 대상에는 정치범·홍악범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등도 포함된다.

1993년 10월 AI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개적인 사형선고를 목격했던 사람들과 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방북자들은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법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고, 처형자도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 앞에 끌려나와……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보고서가 인용한 증언자 대부분이 원산·청진·함흥·신의주·평산·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에 알려진 공개처형은 일부에 불과하다.

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참혹하게 실시된다. 처형방법으로는 보통 총살형이나 교수형이 선택되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혹은 대상자가 복잡계층에 속해 있다고 해서, 또는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임의로 공개처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 말부터 재개되었다. 귀순자 정갑열·장해성(1996.5 입국)과 홍경화(1997.5 입국)는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재개됨으로써 김일성 사망 이후 체포된 범죄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로 공개처형의 적용대상이 단순절도범에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귀순자 주영희(1997.5 입국)에 의하면, 1995년 11월 함흥 회상구역에서 당시 17세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320원(북한돈)을 훔친 죄로 처형당했다. 또한 귀순자 김원형(1997.5 입국)에 의하면, 1996년 10월 남신의주에서 절도죄로 ‘김광철’ 형제가 처형당했고, 1997년 초에도 신의주에서 구리선을 절취하여 밀매한 사람이 공개처형되었다. 귀순자 안선국(1995.5 입국)도 1996년 말 평북 신의주와 남신의주에서 각각 6명과 3명이 전화선이나 동력선 등을 절취한 죄로 공개처형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당국은 심각한 체제위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간부들조차 처형하고 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의하면, 1995년 평양 형제산구

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의화별이 명목의 음란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총살되었다.

또한 일본 『교토통신』(1997.11.6) 등은 방북 소식통에 의거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위원 이봉원 대장, 북한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서기 최현덕 등 다수의 간부가 1997년 9월 평양과 평남 평송 등에서 반역과 간첩사건, 부패혐의로 공개 또는 비밀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항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위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고 있으며, 체제단속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공개처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다. 귀순자 김희근(1997.5 입국)은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고 있으나, 공개처형 대상이 대부분 살인자 등 흉악범죄자이거나 경제범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이들의 처형을 대체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귀순자 안명철(1994.10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1983.5~86.6)한 경험이 있는 최동철(1994.12 입국)은 1985년 「11호 관리소」(함북 경성 소재)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만에 체포되어 공개처형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가운데 기관총,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경

비대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아이들 3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또한 귀순자 안명철은 정치범의 체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3국(예심국)에서 행해지는 자의적인 비밀처형의 실상에 대해서는 7국의 보위부원·경비대원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의 기름을 짜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사람의 힘줄로 채찍을 만든다”는 등의 3국내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소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경비대원들 중에는 개인적인功名심과 입신을 위해 정치범을 살해하고 이를 탈출기도로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화소 내에서의 공개처형 실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귀순자 이순옥(1995.12 입국)은 개천교화소에 수감(1987.12~92.12)되어 있는 동안 9번의 공개처형(남자 7명, 여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교화소 부소장의 주관하에 수감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교화소내 공장건물 구내마당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평양 돌격대소속 취사원 출신인 ‘서영순’(당시 23세, 여자)은 파손된 생산품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공개처형되었다.

### 불법구금 및 고문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로는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한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등의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불법구금, 고문, 비인도적 형벌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B규약)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관한 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의 가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절차 없이 피의자가 구금되거나 고문 등이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처벌이 만연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1997

년에 국내에 입국한 귀순자들도 이와 같은 실정을 증언하고 있다.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가혹하다. 이들은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해 명확한 언급을 받지 못한 채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다. 수감자들은 입소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친지와외의 면회는 물론 서신연락도 금지당한 채 ‘구역’ 안에 있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종신형에 처해지고, 석방은 극소수로 제한된다.

#### 불공정 재판절차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사례가 흔하다. 김일성은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라고 법의 계급성을 명확히 밝혔고, 사회주의 체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특히 형사법)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라고 규정하였다.

북한 형법학자 김근식이 저술한 『형법학』(1986)에는 형법이 “반혁 명분자들을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범규범의 총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이 규정은 형법의 주요 목적이 정치범의 처벌에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형법에는 국가가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제2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형법의 기본정신이며 원칙이기도 하다.

1987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그들이 말하는 북한형법의 계급적 본

질과 임무를 잘 나타낸다. 북한은 형법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썩’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요소라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형법의 성격 가운데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형법 제10조에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42조에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15조에는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에는 “(범죄를) 추진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넷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



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전 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다섯째, 은닉범·불신고범·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형법의 반인권성·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주민의 청원권 역시 헌법(제69조)이나 형법(제127조)에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형사소송법(제169조, 제174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신소와 청원을 할 경우, 신소자를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가 필적조사를 통해 색출하여 벌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소나 청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신소자가 밝혀지면 “무엇때문에 신소를 하였는가?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쳤는가?”라는 식으로 심문하고 있다.

또한 신소의 내용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침에 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3조와 105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103조는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흠잡히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단적 시위, 청원행위를 금지하였고, 제105조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항의나 신소를 억제하고 있다.

귀순자 김운학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은 1988년 2월 말 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비밀투서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가족·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한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권과 관련한 변호업무의 중요성은 변호활동의 국가로부터의 독립 여부에 달려 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함에 있어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영업자라기보다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1조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제4조)하고, 과학적·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사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제35조, 제36조)하는 한편,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조(제11조)하는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 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여 형식상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민참심원제는 객관적인 판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재판심리에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제230조)고 형사소송법에 인민참심원의 역할을 규정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제74조),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부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설

치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군 단위의 경우, 군 당책임비서, 군 행정경제위원장, 군 보위부장, 군 안전부장, 군 검찰소장으로 구성된 ‘군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형식상 사회주의 법 준수교육 및 범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당정 간부들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교화소내 인권유린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경제적 범죄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부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즉 양 기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구분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사회안전부는 그 외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등은 일반적인 감옥형태인 ‘교화소’에 수용된다. 교화소는 사회안전부 교화국에서 관리하며, 교화소·노동단련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2-1-1> 참조). 반면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사회안전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은 ‘관리소’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 등으로 구분되는데, 함경북도 경성 소재의 11호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lt;표 2-1-1&gt;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사회안전부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관리소

‘교화소’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사회안전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귀순자 안선국(1997.5 입국)은 북한당국이 최근 식량난과 교화소내 사망률 증가를 이유로 강원도 원내 천내교화소와 신의주 제3교화소 통합하는 등 교화소를 통폐합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미약한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과거 ‘노동교양소’)에 보내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귀순자 안선국(1997.5 입국)은 1995년 8월 교양소가 없어지고 시·군 안전부 관할 ‘노동단련대’(북한주민들은 ‘노동강관’이라고 별칭)가 생겨났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절도,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는 500~2,5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 단위로 2~3개씩 전국에 약 12~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서는 공민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이전 ‘교양소’는 범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교양시키기 위하여 수용했던 곳이다. 이들에게는 1~6개월의 수용기간 동안 무보수노동(농사, 건설현장 등)과 교양을 실시했

다. 교양소는 대부분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시설은 100~2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생활 불량자 및 청소년 등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교양소’로도 불리웠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했던 ‘집결소’ 등이 있었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국제사면위원회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면위원회에 언급한 「형산교화소」는 교화소가 아니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맞은 편 금문산 기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안전부 검찰국과 재판국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안전부 검찰국과 재판국은 범죄자들의 예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반주민들의 교화소내 생활과 인권유린실태에 대해서는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입국한 이순옥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개천교화소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관할 남신외주 소재 여자교화소가 1982년 3월 개천으로 옮겨오면서 사회안전부 관할 관리소로 바뀐 것이다. 북한내 최대규모 중 하나인 개천교화소의 전체 수용능력은 600여 명(1개 감방에 20여 명)이다. 그러나 개천교화소에는 약 6,0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수감자도 포함되어 있다. 1개 감방(가로·세로 각각 약 8m, 6m)에는 보통 80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 대부분은 암거래·절도 등으로 인해 잡혀 온 경제범이며, 강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수감자 중 80% 이상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수감되는 경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된다.

개천교화소에는 남성수감자쪽에는 22개, 여성수감자쪽에 11개의 각종 공장이 있다. 각 공장은 1개 교화반(300명 내외)으로 구성되며, 그 밑에 조(40~50명), 분조(4~7명)가 있다. 여성수감자쪽의 공장으로는 구두공장, 포화공장(북한군 신발 생산), 피복공장, 일용공장, 수출공장, 재단공장 등이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사회안전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복, 구두, 가방, 혁대, 권총집, 군견 목걸이 및 입마개 등과 수출품으로 편물, 조화, 속옷(위탁 가공), 재털이 받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수감자의 노동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교화소를 관리하는 사회안전부 교화국의 전체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증산교화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축산, 농사, 봉제 등과 관련된 강제노동이 행해지며, 특히 군복 등 상당한 양의 군수물자가 교화소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이 곳에는 주로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이 수감되며, 남녀의 비율은 거의 같다. 또한 「원산교화소」는 규모가 방대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은 북한의 경공업 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교화소 산하에는 여러 지방교화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수감자의 경우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교화소 외부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년에 2회(봄·가을 각각 10일 정도, 파종 및 수확시) 정도이며, 신체건강한 사람만을 차출하여 내보낸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엽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

업량 미달시 240g, 3회 연속 미달시 180g, 독방·예심방 수감시 90g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피복은 10년에 1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교화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경미한 범법자들을 교화소보다는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교화소 내에서 수감자가 '생활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나 주어진 작업량을 3회 연속 미달했을 경우, 그리고 생산물품을 파손하거나 오작품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서지도 놓지도 못하는 '독감방'(높이 1m, 가로·세로 60cm)에 수감되며, '미달방'(1일 90g)이 배급된다. '예심방'은 계속해서 오작품을 생산하거나 생활준칙을 어기는 수감자들이 감금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사회주의 교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구타·고문)이 이루어지며, 심한 경우 처형이 결정된다.

## 2. 평등권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 기회균등 등이다.

세계인권선언 제6조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따라서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



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제반 사회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북한은 헌법 제65조에 “국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주민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

양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 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장엽(1997.4 입국)은 북한당국이 6·25전쟁 이후 '주민등록그룹빠'를 조직하여 출신성분, 친척관계, 전쟁경력 등을 기초로 8차례에 걸친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최근 북한은 표면적으로 성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계층과 복잡계층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1〉 주민성분 조사사업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58.12~'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	'66.4~'67.3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을 분류(직계 3대·처가와 외가 6촌까 지 내사)
3개 계층 51개부류로 구분	'67.4~'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 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 사업	'72.2~'74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파 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 의자, 변절자로 구분
공민증 검열사업	'80.1~'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 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 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81.1~'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공민증 갱신사업	'83.11~'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275.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였다.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6~27%의 중하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

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표 2-2-2>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3계층	51개부류
핵심계층 (전체인구의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정·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테리(8·15 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25 당시 피살자 가족, 6·25 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25 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기본계층 (45%)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류), 중국귀환민, 8·15이전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복잡계층 (27%)	8·15 이후 중소기업가·부농·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68.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간부 등 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기본계층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한 보건 혜택 속에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핵심계층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복잡계층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계층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시 공직자 가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계층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는 불리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복잡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들이 포함된다.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표 2-1-3> 참조).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2-2-3>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혁명열사유가족·애국열사유가족(1~2%)
핵심군중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기본군중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 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복잡군중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피난민),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소상인·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미신송배자 가족, 유학자·지방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감시대상	과거 지주·중소기업가·부농 가족, 과거 친일·친미 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투옥자 가족

\*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복잡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 형사처벌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독재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귀순자 김원형(1997.5 입국)은 복잡계층은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거주할 수 없으며, 전국 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증언하였다.

&lt;표 2-2-4&gt; 복잡계층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리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중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임.

북한은 성분에 따라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당사자의 실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 없이 지대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중앙당 부장, 정무원 부장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는 무시협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귀순자 박수현(1993.10 입국)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되는 고위간부의 자녀들이 '교시받은 학생',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불린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존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예정자는 직계존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연좌제 등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

들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귀순자 김성(1990.6 입국)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 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었던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과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교장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귀순자 임영선(1993.8 입국)은 1988년 4월 ‘군관’(장교)이 된 후 총정치국 간부에게 대학진학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성분이 좋지 않으니까 대학진학을 포기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귀순자 정재광은 1975년 동창인 ‘김룡각’(당시 고등중 3년)의 가족이 부친의 6·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로 인해 자강도 용림군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귀순자 주영희(1997.5 입국)와 서창은(1997.8 입국)은 50~60%의 일반주민 스스로가 본인의 성분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 1987년에 제작·상영한 영화 『보증』은 북한에서 차별적인 성



분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 영화는 김정일의 성분완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별적 성분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한국에 가족을 둔 한 노동자가 성분문제로 각종 불이익을 겪으면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다.

요컨대 북한당국은 성분분류작업을 통해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허가 및 법 적용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국제적인 규약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1993년 세계 비정부간기구(NGO)포럼은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엔회원국들에게 국제규약의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도 육체적·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 보장을 촉구하였다.

세계에는 약 5억 장애인이 있는데, 북한에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장애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하에 평양 시내에 거주하던 신체장애자·정신병자와 그 가족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에서도 장애인들을 산간 오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귀순자들 또한 장애인들이 불

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거주를 제한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윤성철(1996.3 입국)은 장애인들이 영구 피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당의 승인하에 평양 등 외국인이 방문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한 일반 거주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귀순자 오수룡(1995.3 입국)은 난장이인 ‘김기화’가 함북지방 산골지역으로 추방당하였다가 거세당한 후 귀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정재광도 1978년경 모란봉구역에서 불명의 안전원이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16세 가량의 반신불수인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평양 등 대도시에서 장애인들을 찾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여성차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은 제3조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였다. 1979년 12월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성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여성

들이 살아 온 삶은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 구조의 병존으로 인해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여성들은 북한당국이 강요하는 사회주의적 혁명과 건설, 국가와 당의 명령, 가부장적 윤리에 충실한 여성상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한 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는 과업에 동원되었다.

북한당국은 1945년 정권 수립 이래로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정권수립 초기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의 여성해방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탁아소·유아원의 건립,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의 창립 등의 제도적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때문에 봉건적인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체제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이 도입되고 가부장적 국가관이 강조됨으로써 명목상의 여성해방과 여성의 실제적인 삶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여성의 인민회의 진출비율은 다른 선진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을 의미할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식비율만큼 높지 않다. 또한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정무원 각료에 등용된 여성은 5명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 및 여성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여맹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주체사상과 부자세습 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여권 옹호, 성차별 극복, 사회부조리 해결 등을 위한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당당한 근로자’로서 연령(만 16~55세)에 관계 없이 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권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한 유해노동·중노동을 강요당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탄광·광산·제철소·제강소·철도공사장·건설장 등 중공업부문에서 착암공·선반공·운반공·운전공·주물공 등으로 힘든 노역을 수행하였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 간의 불평등과 임금 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경공업·농업·상업·체신·보건·문화·교육 등 상대적으로 ‘여성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5%(1993)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특히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2% 및 51.7%로 남성보다 높다. 정부기관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66.4%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착취는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 기존의 남성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연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결과로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이 1990년 「가족법」에서 법적 규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생활해 왔다. 이같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본래 너자의 본분은 어린애들을 기르는 일”이라는 김일성의 언급과 “요리란

녀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녀성들의 타고난 의무이다”라는 여맹의 규정에도 잘 나타난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녀성들의 권익은 더욱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녀성의 삶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가부장적 질서로 인해 음식물은 아버지, 아들, 딸의 순서로 배분되며, 부족한 식량구입은 어머니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난의 악화는 녀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녀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성폭행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입당 및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녀성에 대한 성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 간부 등이 부하인 녀성직원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한 뒤 그 대가로 당원 자격을 주는 일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당 간부 등의 녀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녀성을 성과 향락의 도구로 인식하는 권력층의 일반적인 녀성관을 반영한다. 이는 북한에 ‘간부절단기’, ‘무지개’, ‘갈개’ 등 간부들의 성폭행을 비유한 은어가 많이 유행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김정일의 경호조직인 호위총국 제5과가 녀성들을 선발하여 위안녀성조직(일명 ‘기쁨조’)으로 특별 관리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간부들의 성폭행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처벌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귀순자 서창은(1997.5 입국)은 평남 양덕군 거상리의 초급당비서 및 지배인 등 12명이 녀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철직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녀성들은 순결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도 일상적이다. 성희롱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희롱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여성을 하대하고 정당한 항의도 '버릇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심한 성희롱이나 놀림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1990년대 이후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라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확대되면서 혼전·혼외 성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결혼적령기 전까지의 금욕을 강조하여 혼전·혼외 성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만약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다. 북한당국은 혼전임신과 성범죄의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노동자의 경우 제대군인이나 대학졸업생보다 2~3년씩 일찍 결혼해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의 여성보건정책은 여성들의 건강한 보건상태를 유지 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북한당국은 여성상담소와 산원을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여성 및 신생아를 보호·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시설 낙후와 의약품 부족에 의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마비로 여성에 대한 의료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3.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

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또한 이는 입헌주의적 헌법의 최고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개정 내용적 한계가 된다.

####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헌법에서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통제를 위하여 자유로운 주거이전 및 여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방문자 경우에도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며,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범위는 크



게 제한된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의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이 확실해야 한다.

아시아감시위원회에 의하면, 1980년대 들어 제한적이거나 외국인의 북한 방문이 허용된 후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들을 방문한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자기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기차나 버스편으로 시외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여행에 필요한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여행자가 유숙지를 떠날 때 주인은 그에게 유숙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여행자는 집에 돌아가면 이 증명서를 공안당국과 직장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귀순자 김창화와 어성일(1987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로는 해당 지역 사회안전부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회안전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 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 제 시간에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같이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산과 노동을 중시하고 여행을 곧 노동력 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된 정책이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 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68년 프예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으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뇌물수수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

의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한 불법적인 이동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녀온 방문객들은 각 기차역에서 보따리를 든 많은 승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최동철은 1980년대에는 추석·한식 등에만 여행증명서 없이 타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평상시에도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식량구입을 위한 불법적인 여행이 크게 늘었다고 증언하였다.

최근 귀순한 김원형과 안선국(1997.5 입국) 등은 철도역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접경도시(신의주 등)에는 접경무역으로 비교적 식량난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증을 갖지 않고 이동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손쉽게 여행증을 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인의 알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과 그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

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때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로지 언론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자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부자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부는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열하고 있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TV의 경우

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며,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TV방송까지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관련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서방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 이미 『'93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일본 언론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신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이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 개인보호 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광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세계정세 변화에 무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능력과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유언비어, 즉 ‘비통’(비밀통신)을 통해 국내사정 및 외부소식을 접하고 있다.

귀순자 윤웅은 1992년 4월 함경북도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4·15 축구경기」 관람 도중 청년 1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 매를 살포하다가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여 즉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서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  
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즉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김일성의 우상  
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 ‘우리식대  
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등을 주된 내  
용으로 삼고 있다.

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  
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출판물은 김일성·김정일 치적이나 정부  
선전용으로만 이용되고 노동당의 대변자로서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  
중비판 및 폭로의 기능만을 가진다. 출판물의 내용은 반드시 김일성  
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지지하고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  
하며 혁명적 원칙 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출판은 이와  
같은 원칙에 합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사형, 전재산 몰수, 강제 노역 등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가  
한다. 언론이나 출판물에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  
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 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결성 이후부터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사회주

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 관철 등,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내세웠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문예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절대화·우상화를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북한 문예정책은 무자비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산하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특히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이 단계에서의 통제가 작품출판 및 공연의 현실화에 앞선 최종적인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출판 및 공연계획을 직접 통제한다. 출판과정에 대한 통제·감독은 문예총을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공연단체에 대한 일체의 통제·감독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와 공연담당 부문 사회단체에서 이중으로 수행한다.

검열에 통과되어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소설, 시, 희곡, 무용극, 미술작품, 음악작품 등에는 검열인이 반드시 찍혀야 한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업적을 찬양하는 혁명전통작품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심한 검열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지도층의 비위에 맞는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검열기준이 된다. 잘못된 것

을 통과시켜도 책임을 지지만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부결시켜도 책임을 지게 된다.

###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1조와 22조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것이다.

북한헌법 제67조에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1987년 형법만 보더라도 제103조에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105조에는 “사회적 혼



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집회·결사를 행하고 있으며 체포되면 중형을 받고 있다. 귀순자 윤웅은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유학생들을 소환하여 사상검토를 한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이들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1991년 5월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되어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청진 광산금속대학에 배속된 체코 유학생 출신 ‘김동국’(당시 30세)이라는 학생도 이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귀순자 정재광도 1980년대에 김일성대에서 경제정책 비판 등을 담은 투서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1983년도 수확부 주도의 투서사건에는 교원도 연루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백과전서』는 “결사의 자유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정치생활의 주인으로 참가하며 결사의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부여된 확고한 헌법적권리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서구식 의미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요 목표는 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즉 노동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단체의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 사상·종교의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은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수용할 권리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언명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즉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불량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전과 전쟁 중 많은 종교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종교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

었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안전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1972년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 역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언급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부정되었다. 이에 비해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제68조 1항에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제68조 2항에서 "누구든지 종교를 빙자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가 갖는 제약 내지 한계를 명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외부에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월 15일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불교의 성도절(成道節) 기념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가졌다. 그리고 199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종교단 일행은 과거 종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북한당국이 많은 종교인들을 탄압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에는 1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와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종교인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의 조작된 발표는 국제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의 『'97 각국 인권보고서』는 "최근에 북한정부는 외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조직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교회·성당, 사찰은 해외 종교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이다.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 만경대구역 건국동 소재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외의 종교인은 존재할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은 종교인들을 무지몽매하거나 정신이상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등 통제구역에는 과거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외부세계와의 접촉 증가와 각국 종교인들의 북한 선교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신앙을 믿는 소수의 종교인이 생겨났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인 수령 이외에는 숭배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모든 형태의 종교 조직화를 봉쇄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사상 및 양심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이데

올로기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국가종교(state religion)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소위 북한의 ‘10계명’인 10대원칙은 북한사회 내에서 정치범과 사상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북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0대원칙은 발표된 1974년부터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보다도 북한사람들을 지배하고 범죄규정에도 적용되는 실제상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

- 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10대원칙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표현 하나까지도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대한 규범이다. 이 규범을 어긴 사람들은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지목되어 처벌된다. '10대원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몰아부친 후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이같은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도 지속하고 있다.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략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썬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로동신문』(1993.4.28)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불타지 않게 꺼내 오려고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사망한 두 젊은 여성의 죽음을 가리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실천한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극찬하였다.

가영환동무가 일하는 동에서 살았던 주순희, 서룡화 동무들은 위급한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바치었다.……이 소행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순희, 서룡화 동무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영생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북한당국은 1997년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승계에 대비하여 10대원칙 준수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를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 중앙방송(1997.6.4)은 1997년 4월 중순에 남포항으로 귀환하던 인민경비대 소속의 ‘부업선’(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선원들이 전원 사망했으나 배가 침몰하기 직전 선원들이 ‘1호작품’인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구명대에 매달아 띄워 보내 무사히 ‘생환’시켰다고 선전하면서 사회안전부장 백학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한 선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같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는 ‘10대원칙’ 각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제5원칙의 제1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원칙의 1항은 “정치적 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10대원칙’ 제3조 6항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대원칙’은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강요하는 극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어느 종교보다도 김일성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격화로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1997년부터 김일성 출생년도를 ‘주체원년’으로 삼아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부터 ‘주체’ 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 사생활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17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헌법 제78조에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 정보기관의 당 간부에 대한 감시는 일반주민보다 심하며, 도청장치까지 동원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김정일이 이같이 고위간부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가장 큰 대상으로 이들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북한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사생활 감시에 따른 공포분위기를 자주 전한다.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 거론·비판하거나 당이 결정해 준 한계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들 사이에도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주고 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상위조직부터 하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호 비판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씩 실시되는 집단학습제도이다. 북한주민들은 생활총화시간에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까지도 낱낱이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안전부 소속 숙박검열대는 무단 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와 관계된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나올 경우 집 주인의 안내 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하고 있다. 인민반장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고, 사상동향이나 가정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인민반장을 가장 두려워 한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였다.

사생활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억압기구들이다.

피라밋식 위계질서와 당구조하에서 하급당조직이나 하급당원들은 상부의 결정과 지시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당원들은 모든 기관, 단체, 직장에서 핵심적인 정치요원으로 기능하고, 일반주민들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으로 주민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은 하급당조직이다. 최하 기층

조직은 당원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 세포조직이다. 당 세포조직은 주로 생산단위를 바탕으로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등으로 확대된다.

당 기구 중 당 간부와 당원들을 비롯하여 정당 및 사회단체, 전체 주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부서는 노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1974년부터 김정일이 장악하기 시작한 이 부서는 5개부로 나뉘어 국가 전 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지휘·통제하는 바, 구체적인 임무는 당 생활지도와 간부들의 인사를 관장하며 간부들의 사생활을 파악하는 등 두 가지이다.

주석의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김정일체제 유지의 첨병 역할을 해 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74년 2월 ‘사상부문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일이 작성해 발표했다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칭되는 10가지 범법규정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기구는 소위 반당·반체제 주모자 색출·검거, 특정지역내 잠입 간첩 색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일명 ‘종파분자’ 및 정치범들의 특별관리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또한 간부와 일반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지자를 선별하는 ‘사상사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도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며, 사회안전부는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절대로 협조해야 한다.

사회안전부는 해방 직후부터 일재잔재와 지주세력을 청산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등의 숙청에 최선봉 역할을 담당했다.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에는 독립된 부서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당의 직명’으로 정치사찰을 담당하여 왔다.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는 국가치안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독

재기구로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대주민사찰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즉 이 기구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김일성·김정일 1인 독재체제 하에 순종케 하기 위한 주민탄압기능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는 정무원의 한 부서로서 중앙 기구로는 사회안전부와 부직속기관, 도에는 사회안전국과 도직속기관, 시·군에는 사회안전부, 각 리단위에는 리분주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 4.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울러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규약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직접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른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3년째 최고인민회의나 당 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1994.7)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선거행위도 일절 치르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당 총비서 선출이 선거가 아닌 추대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5년 임기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가 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선거 및 임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김정일의 자의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1992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6조에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6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미 국무부 『'97 각국 인권보고서』는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 선거에서 단지 한 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정부 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률을 보인다고 한다. 300만 노동당원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엘리트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 데 힘쓴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보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피선거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기 때문이다.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직장, 사회단체, 주민회의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에서 사전에 입후보자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친 후보임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들도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은 『로동신문』(’97.10.5)을 통해 서방식 다당제의 정치구조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아프리카의 콩고, 라이베리아, 카메룬 등 여러 나라들에서 서방의 다당제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당파들 간의 치열한 권력쟁탈전과 종족분쟁, 민족분쟁만을 야기시켰다”면서 “서방식 다당제는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본보기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혼란과 좌절을 가져오는 화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귀순자 오수룡의 증언에 의하면, 선거위원회는 선거 30~40일 전에 구성된다. 선거위원회에는 담당 보위부원 및 안전원, 각 공장기업소 대표 2명, 인민반장 등이 참여한다. 1개 선거구당 필요한 선거담당원은 각 기업소나 인민반 등에서 선출하고, 1개 선거구당 보통 5~6개의 인민반, 즉 120~130세대가 소속된다. 선거위원회가 구성되면, 사회안전부의 선거인명단과 동사무소의 명부를 대조한다. 그리고 공민증을 수거하여 이들 명단과 대조하여 주민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각 인민반에서 선거인명단을 공개한다.

투표는 구역마다 선거을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보통 당일 오전 10

시 정도면 어느 정도 완료된다. 선거불참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미리 부재자 신고(출장신고)를 하여 출장가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출장자나 의식불명인 환자의 경우는 당세포나 부모형제가 대리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투표율은 거의 100%를 기록하게 된다.

투표함은 지난 1957년까지는 흑·백투표함을 사용해 오다가 1962년부터 찬·반 단일투표함으로 바뀌었다. 귀순자 장기홍(1991.11 입국)에 의하면, 찬성일 경우에는 용지에 아무 기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반대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비치된 연필로 반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담당원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필도 없어 반대 투표는 나올 수 없다고 귀순자 김원형(1997.5 입국)과 주영희(1997.5 입국) 등은 증언하였다. 따라서 거의 매 선거마다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 1. 생존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북한주민들은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인권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3~4년이 지나면……우리 인민은 모두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4대목표(기와집, 고깃국, 비단옷, 쌀밥)’는 30년이 지난 1993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되풀이되었으며,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과 주민생활의 향상은 1997년 신년사에서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1960년대보다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심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돈으로 식량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두 번씩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량배급제는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1952년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가 발표되면서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다.

식량배급제는 절대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식량 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무회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양양하며,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의 양은 주로 직종과 성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작업량이 많고 체력 소모가 요구되는 직종이나 특수한 일이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하루 800g 또는 그 이상의 양곡이 배급된다. 둘째, 개인의 정치적 지위와 각자의 성분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양의 양곡이 배급된다.

북한당국이 식량배급과 관련한 등급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몇 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배급을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가족과 특수 의병은 가장 높은 2개 등급에 해당한다. 각료급 이상의 노동당 고위간부는 세번째로 높은 10등급에 해당하고, 이들은 ‘10호상점’을 통해 식량을 배급받는다. 수감자들은 가장 낮은 1 등급에 해당하고, 이들은 생명유지에 훨씬 미달되는 하루 200g 이하의 양곡만을 배급받는다.

북한주민들은 일반노동자 기준으로 하루 700g씩 계산된 식량을 15일에 한 번 배급받았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1973년 이후 전쟁비축용, 조국통일저축미, 절약미, 애국미 등의 명목으로 매월 배급표에서 5~10일분의 식량을 공제함으로써 일반노동자들은 600g 이하의 식량을 배급받았다.

&lt;표 3-1-1&gt;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단위: g)

연 령	0~4세	5~14세	15세 이상		
			일 반 노동자	중노동자 군 인	병· 노약자
배급기준량	300	500	700	800	300
'73이후 전쟁비축미 월 2일분 공제	260	433	607	695	240
'87이후 절약미 10% 공제(식량사정악화시)	234	390	547	624	234

&lt;출처&gt; 통일원, 『'96 북한개요』, p. 289.

북한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1992년 이래 매년 약 200만 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더욱이 1995~96년에 걸친 두 차례 홍수와 1997년 가뭄은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당국은 외화난으로 수요량조차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과 중국 등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 지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다. 집단적 생산방식에 의한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와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은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비료·농약·장비 등의 공급 부족은 영농기반을 약화시켜 식량증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난에 겪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은 오래 전에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라고 선언하였고, 1984년부터는 종래의 ‘의식주’라는 용어를 ‘식의주’로 변경 사용할 정도로 식량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식량난의 지속으로 인한 감량배급은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세계식량계획」(WFP)이 제시한 최소영양공급 한계선인 458g(1,603kcal)에도 못 미치는 배급을 받아 왔다. 1996년 들어 배급량이 일부지역에서 300g으로 떨어졌고, 일부지역에서는 추수 직전인 8월~9월경에 200g~250g까지 떨어졌다. 귀순자 안선국(1997.5 입국)은 신의주에서는 1997년 1월 초에 2주분의 식량만이 지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식량난은 일부지역 주민과 중소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산간지대인 함경도·양강도·자강도 등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하다. 중앙배급제의 붕괴와 국제지원의 일부 지역 편중, 에너지난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마비로 인해 이 곳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의 식량난의 지속은 많은 주민들을 기아 내지 영양실조 상태로 빠뜨렸다. 특히 식량난은 일부지역의 노인층과 유아들에게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식량난으로 인한 일부지역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방문을 허용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1997.10.19)는 주민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식량부족 현상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함흥의 한 고아원 원장인 최광옥은 고아들의 70%가 영양실조나 병으로 부모가 죽은 아이들이고 나머지 30%도 부모들이 부양을 포기하고 거리에 버린 아이들이라고 말하였다. 고아원 어린이들은 영양부족으로 머리색이 갈색으로 변했고, 모발이 빠져 부분적인 대머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머리와 얼굴에 화농증을 앓고 있다. 이 고아원들은 4세 이하의 198명의 어린이가 수용되어 있으나, 이들 중 20%가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을 것이라고 최광옥 원장은 말하였다.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감량배급이 실시되자 주민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이거나 암시장,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생필품·주택이용권·배급표 거래 등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즉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주민들은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기도 하고, 공장시설물·고철 등 상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여 국경에서 식량 등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폐기발(부대기발, 소토지)을 경작하여 잉여식량을 장마당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한다. 식량난과 불법적인 상행위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랑아·고아 발생, 이혼 등으로 가정파괴와 여성들의 매춘 혹은 인신매매도 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국경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주민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7년의 전반적인 기후상태와 국제기구·비정부기구 및 주요 국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의 식량수급상황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7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려웠으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97년도 하반기 수급사정은 상반기보다 호전되었다. 통일원은 1996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69만 톤, 수요량을 570만 톤, 해외공급량을 169만 톤(교역 70만 톤, 원조 99만 톤), 순수부족량을 325만 톤으로 각각 평가하였다(<표 3-1-2> 참조).

또한 통일원은 1997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48.9만 톤(쌀 150.3만 톤, 옥수수 159.9만 톤 포함)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1996년도 생산량 369만 톤에 비해 5.4% 감소한 것이다. 통일원은 5월 파종 및

이앙기의 저온현상으로 인한 생육 지연, 6~7월 간의 가뭄(평년 대비 36.5% 강우)으로 인한 밭작물의 극심한 피해, 8월 중순 평안남북도·황해도의 해일 피해, 그 밖의 농업자재 부족과 영농의욕 감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관개 시설이 양호한 벼 생산은 호전되어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하에 통일원은 최소수요량(458g/1일/1인당)을 기준으로 총 곡물수요량을 476.4만 톤으로 계산하여 1997/98 양곡년도에 127.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고, 아직 미이행된 24.1만 톤이 계획대로 지원된다면 총 103.4만 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감량배급량(군인·중노동자·특수계층 700g/1일/1인당, 일반주민 546g/1일/1인당)을 기준으로 필요한 총 곡물수요량을 541.3만 톤으로 추정하고, 자체 생산량만으로 192.4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3-1-2〉 통일원·WFP/FAO 북한 식량수급 평가

(단위: 만 톤)

	구 분	통 일 원	WFP/FAO
1996/97 양곡년도	총 생산량	369	287.4
	총 수요량	570	496.1
	부 족 량	201	193.4
1997/98 양곡년도	총 생산량	348.9	266.3
	총 수요량	476.4	461.4
	부 족 량	127.5*	195.1**
	원조미이행분	24.1	24.1

\* 최소수요량인 인구 1인당 평균 458g/1일을 적용하여 산출함. 감량배급량을 적용하면 192.4만 톤임.

\*\* 원조미이행분 24.1만 톤과 유상교역량을 감안하면 101만 톤임.

한편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1997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266.3만 톤(쌀 152.5만 톤, 옥수수 113.8만 톤 포함)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WFP/FAO가 추정한 1996년도 생산량 287.4만 톤에 비해 7.3% 감소한 것이다. WFP/FAO는 최소수요량을 기준으로 1997/98 양곡년도 동안 필요한 총 곡물수요량을 461.4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자체 생산량만으로는 195.1만 톤이 부족하다(<표 3-1-2> 참조).

<표 3-1-3> 기타 추정 주체별 북한 식량수급 평가

(단위: 만 톤)

	구 분	IFRC	미국 조사단	북한
1996/97 양곡년도	총 생산량			200
	총 수요량			627
	부 족 량			427
	출 처			'97.10 미조사단 방북시 언급
1997/98 양곡년도	총 생산량	300~350	350	268.5
	총 수요량	389(450g 기준) 432(500g 기준) 740(산업용 등 포함)	400~450	402.2
	부 족 량	160	50~100	
	순수외부지원 필요량	24.1		70
	출 처	'97.11 발표	'97.11 방북조사	북한농업위원회 차린석 부국장 「신화사통신」 ( '98.1.20)

이같이 우리 정부와 WFP/FAO의 평가가 다른 것은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가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적 지원 유도를 위하여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수요량을 확대하여 발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과 비슷한 기후의 지역에서 곡물을 모의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국제기구가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수정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통계보다는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돕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 왔다. 1998년 1월 초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은 총 4억 5,850만 달러(한국 기여분 포함)이다. 유엔은 대북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998년 1월 초 현재까지 약 2억 88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와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도 2억 4,970만 달러(국제적십자사연맹 2,951만 달러 포함)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표 3-1-4> 참조).

우리 정부도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에서 1997년도에도 대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지난 2년 반 동안(1995.6~98.1.9)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아동기금」(UNICEF),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총 2억 8,47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실시하였다(<표 3-1-5> 참조).



<표 3-1-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1998.1.9 현재)

(단위: 만 달러)

	지원시기	지원액수	목표달성률	비 고
UN기구	'95.9~'96.6 (1차)	927	46%	미국 222.5, 일본 50, EU 20
	'96.7~'97.3 (2차)	3,470	8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40, EU 930
	'97.4~'98.3 (3차)	15,781	84%	미국 4,537, 한국 2,533* EU 2,466, 일본 2,700
	소계	20,880		한국 2,873 포함
국제 적십자사	'95.10~'96.3 (1차)	349	84%	
	'96.4~'96.10 (2차)	443	77%	
	'96.11~'97.6 (3차)	756	70%	
	'97.7~'97.11 (4차)	1,403	81%	
	소계	2,951		한국 496 포함
개별국가 · NGOs 직접지원		17,273		**
		630		조총련
		4,116		AMERICARES, 유진벨 등
	소계	22,019		
총액		45,850		한국 3,369 포함

\* 한국 기여예정액 중 WHO 70만 달러, FAO 50만 달러 미계상

\*\* 일본(95년 쌀 15만 톤 2,250만 달러), 중국(96년 12만 톤 3,055만 달러, 97년 옥수수 19.5만 톤 3,434만 달러, 쌀 1.2만 톤 334만 달러), 대만(97년 쌀 2,000톤 60만 달러), 미국(97년 옥수수 5.5만 톤 1,207만 달러), EU(97년 쌀 7.1만 톤, 옥수수 2.4만 톤 2,840만 달러, 보건의료 776.8만 달러), 스위스(95년 쌀 8,000톤 등 246만 달러, 96년 보건의료 28만 달러, 97년 쌀·옥수수 197만 달러), 이탈리아(97년 쌀 29만 달러), 베트남(95년 쌀 100톤 4만 달러, 97년 쌀 1만 톤 278만 달러), 러시아(95년 쌀 20톤 등 13.6만 달러, 97년 쌀 29만 달러)

<출처> 통일원 인도지원국, "대북지원 현황('95.6~'98.1.9)."

<표 3-1-5> 한국의 대북지원(1995.6~98.1.9)

(단위: 만 달러)

	지원시기	지원액수	경유기구	지 원 내 역
정부차원	1995	23,200		쌀 15만톤
	1996	200	WFP	혼합곡물
		100	UNICEF	분유
		5	WMO	기상자재
	1997	600	WFP	혼합곡물
		34	UNICEF	ORS공장비용
		1,053	WFP	옥수수, 분유
		1,000	WFP 등	옥수수, 분유, 복구장비 등
		50	IFRC	모니터 비용
	소계	26,242		
민간차원	'95.9~'97.5 (19회)	496 (396,915만원)	국제적십자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 개, 식용유 18.6만톤, 라면 10만 개, 양말 3만 5,000켤레, 감자 1,940톤, 옥수수 4,980톤, 봄무종자 48톤, 봄배추종자 6.4톤
	'97.6~7 (1차지원)	850 (757,100만원)	남북적십자	옥수수 4만 1,521톤, 밀가루 2,000톤, 라면 15만 상자, 비료 2,000톤
	'97.8~10 (2차지원)	883 (803,700만원)	남북적십자	옥수수 1만 7,082톤, 수수 1만 3,000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 l, 분유 100톤, 어린이영양제(비타민) 3만 병
	소계	2,229*		
총액		28,471		

\* 당시 환율 적용  
 <출처> 통일원 인도지원국, "대북지원 현황('95.6~'98.1.9)."

정부차원에서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억 6,242만 달러(1997년 2,737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고, 민간차원에서는 1995년 9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약 2,229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1997년에 남북적십자 간에 접촉이 이루어져 적십자사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실시되었다. 1997년에 남북적십자간 직접 접촉을 통해 총 1,733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위기상황과 전반적인 식량수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간 사전허가제를 통해 구호요원들의 현지 실태조사를 제한하고, 취약계층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다. 이 때문에 각 기구별로 식량수급상태를 다르게 추정하고, 북한이 공개하는 일부지역의 식량사정을 과장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중앙배급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북한의 중앙배급제를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원의 일부가 북한당국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군 및 집권계층에 대한 특별배급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지원물자의 일부지역 편중과 중간 유출은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지원량의 약 40% 정도만이 지원대상에게 공급되는 국제적 지원사례를 감안하더라도 그간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나치게 평양 등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왔다. 또한 지원물자의 유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을 어렵게 하여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에너지난의 해결과 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증산, 농민들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공여 등 북한당국의 자구 노력이 없는 한 북한 식량난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북한당국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과거 김일성에 의해서 금지되었던 이모작의 장려, 협동농장 목표량의 하향 조정, 과거 15~20명에서 7~8명으로의 분조(작업반) 규모 축소 등 부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1998년도에도 북한은 국방비 절감 등 자구적인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국제기구, 서방국가 및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영원한 목표이며, 인류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였던 1·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권리로써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와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식·주, 의료 및 필수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헌법 제70조에는 모든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72조에는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사회보험에는 연금제도가 있을 뿐 그 밖의 대부분은 공적 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 사회보장법」(1951.8 제정)과 「사회주의 노동법」(1978.4 제정)에 따라 각각 만 60세와 만 55세까지 직장생활을 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적 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보호 시책으로는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조선중앙방송』, 1997.12.5).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보수제를 시행하는 북한당국은 실제로는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능력을 잃은 무의탁 노인들과 불구자들을 국가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고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무노동자의 제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앞세워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무상

치료제'이다. 북한헌법 제56조에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질병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정책의 목표를 위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 주민들로 하여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담당의사들의 진료수준 및 자질 미달과 4~5개 인민반을 책임지는 호담당의사에게 최고 4,000명까지 진료케 하는 과다 할당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분에 따른 의료체계의 차등 적용은 무상치료를 무색케 한다. 모든 병원은 치료 대상과 급수를 정해 놓고 진료대상이 아닌 주민들의 치료는 불허하고 있다. 평양의 '봉화진료소'(김일성·김정일 가계와 당·정 장관급 이상), '어은병원'(군 장령), '남산진료소'(차관급 이상, 일부 인민배우·북송교포) 등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은 일반주민의 치료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보통 동·리 진료소나 시·군·구역 병원을 이용한다. 이 병원들의 치료시설과 의약품 수준은 극히 열악하다. 귀순자 김순희(1997.5 입국)은 주민들이 항생제나 마취제와 같은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구비되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인편이나 해외친척에게 의약품 구입을 가장 많이 부탁한다. 지방 일반병원의 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 등 열악상을 『위싱턴포스트』지(1997.10.19)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무너져가는 동굴 같은 건물에 전기도 없는 1,000개의 병상을 갖고 있는 지방병원(함흥 소재)은 어두운 복도가 온통 소변 악취로 찌들어 있다.……이 병원에는 항생제나 정맥주사는 찾아볼 수 없고 들 것이 없어서 환자들은 사람 등에 업혀서 이동하고 있다.……병원에 약과 음식이 없어 극소수 환자만이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이현명 병원 부원장은 결장수술을 마치고 고통을 참느라 침대를 힘껏 쥐고 있는 환자를 가리키며 병원에 마취제가 부족해서 마취 없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환자의 대부분은 직장·위장병 및 간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점진적인 기아의 결과라고 이 의사는 덧붙였다.……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약품과 급식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당국의 통제로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이현명 부원장은 밝혔다.

<표 3-2-1> 북한의 의료시설 규모

유형	소재지	의사수	전문의	병상	주요 장비
도의학 대학병원	도인민위 소재지	약 200명	모든 과	800~1,200	기본진료 및 치료용 모든 장비
군인민 병원	군인민위 소재지	약 5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혈액과, 간염과, 구강과, 고려치료과(14개과)	100~200	앰브란스 X-선 현미경
리인민 병원	리인민위 소재지	10명 이내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6개과)	5~20	(규모가 클 때) X-선 현미경
진료소	산업장 협동농장 부락	1~2명		1~2	청진기 등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314.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허구성은 의약품 판매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북한당국은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보수의 1%를 의료비로 공제하여 왔다. 경제난의 악화로 의약품 생산과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북한에서 생산하는 약조차도 거의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외화약국이나 외화상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당국이 외화를 걷어 들이기 위해 외화약국이나 외화상점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의약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각종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병원이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의 발휘와 ‘항일유격대식 사업’ 전개를 통해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생산기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조선중앙방송』, 1997.10.31)하는 한편,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약초재배 및 증식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의 전개를 촉구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 3. 환경권

환경권이란 인간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 2세대 인권으로 각각 불리는 환경권은, 특히 환경 파괴와 오염 그리고 이와 결부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하게 부각된 근래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강조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선포된 「인간환경선언」은 제1원칙에서 인간은 존엄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본가들이 최대이윤이란 관점에서 이윤만 얻을 수 있다면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는 반면, 비생산적 지출이라고 여기는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에는 자금과 설비를 투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은 최근 들어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유엔 제52차 총회에 참가했던 북한대표단 단장 최수현(외교부 부부장)은 「77그룹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성장에 각별히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일부 선진국의 인권·환경 분야에 대한 압력을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방송』, 1997.10.5).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미국을 '지구생태환경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환경외교를 적극화하고 있는 것이 지구환경보호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진정한 환경보호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를 실현시킬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 중에서도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창조적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가 인민대중을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적 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우선한 경제정책을 앞세움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등한시해 왔다. 다만 1978년 4월 18일 채택된 「노동법」과 1986년 4월 9일 채택된 「환경보호법」 및 1992년 4월의 개정헌법 등에

서 근로자들의 문화위생적 근로조건과 자연환경 보호를 기본적 권리로  
 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북한 전역에서는 산림 황폐화, 공  
 기·물·토양의 오염, 동·식물의 남획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건강한 자연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 훼손에 의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이 행한 각종 연설과 북한의 영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대표적인 대기오  
 염지역은 함흥지구이다. 함흥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도시이  
 다. 그 중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홍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모방직공장 등이 위치하여 지역의 70%가 공장지대인 함흥 홍남  
 구역은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  
 하다고 이 지역 출신 귀순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한다. 이같은 사실은  
 남북문제연구소가 1992년 12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촬영한 『다시 찾은  
 함흥』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검은 연기가 치솟는 홍남비료공장  
 과 안개가 낀 듯 오염물질로 흐릿한 함흥시가를 볼 수 있다.

이 지역 공해의 심각성은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김일성은 1989년 8월 27일 “마전유원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라  
 는 연설에서 함흥지역의 공해현상을 막으려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야지 그저 공해현상을 막자고 구호나 부르면서 소극적으로 달라붙거  
 나, 공장과 기업소의 낡은 설비를 보수할 때 헌 바지를 깎듯이 땀질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대기오염은 함흥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김일성이 1977년 4  
 월 29일 “토지법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지적했듯이 김책제철소가  
 위치한 청진의 주민들도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 외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위치한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등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북한의 수질오염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북한은 1986년 제7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동강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6mg/1인데,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8.3mg/1이라고 최초로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면서 대동강의 깨끗함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김일성이 1989년 4월 20일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평양시를 비롯하여 대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잘 갖추어 놓지 않고 오수를 망탕 흘러보내기 때문에 대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수질오염을 지적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의 수질은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 시멘트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생활폐수에 의해 식수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이며, 두만강 또한 북한의 남양, 회령 및 북한 제일의 철광산이 있는 무산과 중국의 도문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공장, 펄프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산업 및 도시폐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이들 산업시설과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독성물질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강·하천 및 해양오염을 북한도 시인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7년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회 환경위크샵에서 북한대표는 두만강은 물론 인근 지하수도 오염되었으며, 나진·선봉지역의 항구인근 해역도 수질이 나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원산공단과 인근 함흥공단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해 바다가 크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원산지역을 찾아서』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토양오염도 심각한 실정이다. 토양이 오염되고 황폐화된 원인은 우선 식량증산을 위해 다량의 비료와 농약을 살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각국의 평균보다 수배나 많은 화학비료를 과다 투입한 결과 토양은 산성화되고 지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약의 다량 살포로 토양은 크게 오염되었다. 또한 제한된 경작지에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휴경기나 순환경작 없이 쌀과 옥수수를 계속 재배함으로써 토양이 척박하게 되었다.

한편 광범위한 산림파괴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었다. 산림파괴는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잘못에도 기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다락밭 건설이었다. 김일성은 1976년 10월 14일 “알곡 1,0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알곡증산을 위해 다락밭 만들기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수년 내에 20만 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1989년 4월 20일 한 연설에서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은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망탕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다가는 술한 땅을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다락밭 건설이 산림 황폐화의 주요 원인임을 시인하였다.

다락밭 외에 뚝기밭도 산림파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많은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화전방식으로 풀과 나무를 베고 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다.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당국도 주민들의 불법적인 뚝기밭 건설을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였다.

또한 현재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지방당국들은 부족한 식량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 몇십 년 내지 몇백 년 자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여 중국 등에서 식량과 맞바꾸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중국 국경지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림남벌과 다락밭 및 돼기밭 건설로 인한 산림 황폐화의 실태는 남북문제연구소가 촬영한 『국토의 최북단 청진, 나진』편에 잘 나타난다. 평양에서 청진으로 가는 도중 차창 밖을 촬영한 장면들은 다락밭 건설로 인한 철로 주변 야산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산사태의 흔적,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주택가 모습을 잘 보여준다. 또한 『두고 온 고향 신의주, 영산』편에서도 다락밭 건설로 인한 산림 황폐화 상태를 뚜렷히 볼 수 있다.

북한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1995년 환경보호법 시행세칙을 채택하였으며, 1996년에는 비상설기구인 「국가환경보호위원회」(1993년 구성)를 정무원 산하 「국토환경보호부」로 개칭하여 상설화하였다. 또한 1996년 10월 31일에는 1991년 「모범산림군(시·구역)」, 칭호 대신 「국토환경보호모범군(시·구역)」 칭호를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지킬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조치는 북한이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노력동원을 유도하기 위한 대내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할 목적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당국의 주장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선전에 불과하다. 그 선전의 허구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환경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생활현실 속에서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인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 4. 소유권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산수단의 사유 여부에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의로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헌법 제20조에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21조에는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고 있다.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이 포함되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헌법 제22조에는 국가소유 다음으로 중요한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며,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단체는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를 소유할 수 있는데, 협동단체소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제23조)시켜 국유화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를 우선 보호하는 북한이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며,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

어지고, 또한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의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제84조)이고 국가소유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규정을 볼 때, 개인재산은 국가와 협동단체 재산에 비해 법 체계상 상대적으로 하위의 개념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개인소유마저도 국가의 통제와 경제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당의 통제는 가정에서 쓰는 생활필수품의 구입에도 미치고 있다. 대개 물품은 월별로 인민반을 통해 할당되며, 품목은 생필품이 주종을 이룬다. 구매권의 배당은 인민반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물품부족으로 이같은 물건조차 제때에 배당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TV·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도 구매권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주민이 이러한 고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 돈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매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열성을 보여야 한다. 구매권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노력동원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거나 당 간부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 5장(이불장·양복장·책장·식장·신발장) 6기(녹음기·세탁기·TV·냉장고·재봉틀·선풍기)를 다 갖춘 주민은 당 간부나 일부 북송교포 등 전체 주민의 10%에 불과하며, 2~3개만 갖추어도 비교적 부유층에 속한다.

주민들이 소유한 제한된 사유재산조차도 국가가 제공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연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김일성·김정일이 선물로 하사한 세탁기·TV·가전제품 등이 그것이다. 개인이 이런 물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충성심이 결여된 행동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더욱이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전횡도 종종 보고된다. 북한당국은 주요 행사 때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특별징세를 부과한다. 하부기관들은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을 강압한다. 비록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하였다고 선전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북송교포와 이산가족에 대한 보위부원·안전부원 등의 착취도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북송교포 가족이나 친척이 북송교포의 안위를 위해 북한에 보내는 현금과 물품 중 상당부분은 공식적·비공식적 명목으로 북한당국에 들어가고 있고, 해외거주 가족이나 친척과의 서신교환이나 상봉을 조건으로 이산가족이 현금을 상납하는 일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국가가 언제라도 개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는 주택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 소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시가 내려오면 주택을 비워야 한다. 또한 국가소유인 주택의 수리 및 보수는 응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에서는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보수에 소요되는 자금과 자재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소요되는 자재(목재, 페인트, 모래 등)를 개인이 준비해 놓고 주택보수사업소에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보수가 가능하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주택건축이나 매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택의 관리 및 입주 배정권은 도·시·군 인민위원회 경영사업소가 장악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건축된 등급



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신분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배정받아 사용한다.

집단주의적 주생활 양식으로 인해 일반주택 건축시 개인과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고려는 배제된 채, 주택은 침식위주로 설계되며 생활공간도 집단의 공동 이용에 중점이 맞추어진다. 즉 주거공간도 일상적 감시·동원 및 지휘·통제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주민들의 신분상승 욕구 고취와 당 지시에 대한 순종을 위해 계층에 따라 규모와 시설이 다른 주택이 배정된다. 따라서 주택배정은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을 두며, 특호에서 4호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일반노동자들에게는 2~3호주택이 배정되며, 당 간부들에게는 40평 내지 60평 정도의 4호 및 특호주택이 배정된다. 4호 및 특호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5%를 차지한다.

대대적으로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북한당국의 지속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축설비 및 건축자재 부족으로 주택의 총 부족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1~2년씩 별거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반주민들 역시 방 2, 부엌 1의 3칸주택에서 두 세대가 '동거살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귀순자들은 최근 경제난과 주택난으로 비밀리에 전세를 주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증언하였다.

## 5. 근로권·휴식권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7조와 제8조에는 계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

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헌법 제70조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업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이다. 그리고 헌법 제83조에서는 노동의 신성한 의무, 제82조에서는 노동의 집단화, 제34조에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 등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정)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2·3조 및 제4조에서도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의 모든 북한주민은 이와 같은 규정과 헌법 제31조에 따라 좋은 싫든 당이 정해 주는 직장에서 법이 정한 연령(남성 60세, 여성은 55세)까지 노동할 의무가 지닌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단체조직원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며, 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되기 때문에 직업동맹은 단지 형식상 존재할 뿐이다.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과 로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일 뿐이다.

북한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59조에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61조에는 직무를 태만하게 이행하는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 종료후 4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다.

한편 북한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모든 노동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 정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고, 김일성 부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정도 휴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헌법 제30조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

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한다”는 노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8시간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정해 놓은 일별·월별·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80년대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였다.

## 6.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이란 사람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경제적 소득활동을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6조에는 체약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헌법 제70조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

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분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능력은 부차적이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가 직장배치를 담당한다.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도 또는 시 행정경제위원회가 직장배치를 담당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중앙당 간부과의 조정을 받는 대학당국이 담당한다. 사병 출신의 제대군인에는 출신지역 시·군 행정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군관 출신은 시·군 당 간부과가 담당한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 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그러나 귀순자 김희근(1997.5 입국)에 따르면, 뇌물을 바치면 성분에 관계 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될 수 있다.

직장배치는 대체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 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당국은 1997년 말에 5,000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충성의 결의모임을 갖고 덕천·북창·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북한중앙방송』, 1997.12.12).

집단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에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직성에 관계 없이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식량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 배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직장이동 불허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직장을 통해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심리적인 복종과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격한 노동법령이나 배급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퇴직하여 장사하거나 식료·유통 부문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직장이동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간염 및 결핵 요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 7.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정비(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를 존중하도록 지

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13조에는 제약국은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 및 인종·종족·종교 간의 이해·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헌법 제73조에는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헌법 제43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교육목표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인민의 인테리화’를 교육의 당면 목표로 설정하여 투자를 강화하여 왔다. 197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1년 무료의무교육제’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9.5)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체계는 주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과학교육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의 교육위원회는 당이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산하의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교육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기본학제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원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및 박사원 2년이 있다. 이 밖에 특권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의 특별학제와 성인교육과 기술교육을 위한

특별학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제와 달리 학제상 구분이 없는 ‘혁명학원’(만경대·강반석·해주혁명유자녀학원 등)과 예능·체육학원과 같은 특수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 위주로 편성된다. 인민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등을, 고등중학교 6년 동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현행 당 정책」 등의 과목을 배우고, 이 외에도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답사, 각종 야영훈련 등을 해야 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은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중학교부터 주체사상을 교육시키고, 특히 고등반부터는 사로청 조직에 가입시켜 주체사상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학생들에게도 ‘자원노동’이 요청된다. 북한당국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한다는 교육방침을 설정하고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실습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인민학교 어린이들조차 노력동원에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농촌지원’, ‘경제건설’, ‘좋은 일하기 운동’, ‘꼬마계획’, ‘선전대활동’, ‘자연개조사업’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벌여 아동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고등중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은 당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의 공장, 농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 파견되어 현장활동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 곳에서 주로 미숙련작업, 모내기 및 추수활동, 도로건설 등을 한다.

북한은 1997년에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20주를 맞아 김정일을 ‘교육사상의 대가’로 내세우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



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에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목적으로 ‘김정일 위대성 교양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김정일의 혁명활동에 대한 교과과정을 확대하는 등 ‘김정일 위대성’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목적으로 ‘김정일 명언’에 대한 문답식 경연과 토론회 등을 벌이고 교원들로 하여금 ‘김정일 명언’을 강의내용에 인용하도록 하는 등 학습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학생들의 전쟁분위기 조성과 군사훈련·국방체육 강화를 통해 유일사상과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은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에는 ‘7~10월 전쟁설’을 유포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년영웅따라배우기운동’, ‘군입대탄원대회’ 그리고 ‘우리학교-우리초소운동’ 등을 독려하였다. 또한 고등중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격훈련과 총검술, 인민학교에서 진행되는 제식훈련과 응급조치훈련 등도 강화하였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획일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침투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사회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다.

고등중학생들의 대학입학과정을 보면, 교육당국은 고등중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시험을 시행한다. 정무원 교육위원회는 시험결과에 따라 도·군 단위로 각 대학에 할당된 인원을 배정해 준다. 군·구역의 대학모집과에서는 할당된 인원의 수험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각 고등중학교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좋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희망자

가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성분이 좋고 권세가 있는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때문이다. 간혹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시험을 치루더라도 대학에서 면밀히 재실시되는 성분조사에 걸려 주요 대학으로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대학생 모집과정에서 성분조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간부와 부유층 자녀들 뿐이다. 성분이 좋고 간부가 많은 평양에 대학입학 예정인원이 가장 많이 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주요 대학에 대한 시험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귀순자 김희근(1997.5 입국)의 증언에 따르면, 외화벌이 담당자나 북송교포 자녀들도 추천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학교측에 각종 기자재를 기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학교교육은 날로 비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귀순자 김희영(1997.5 입국)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결석률이 20%를 넘어섰으며, 교원조차도 수업 시간에 장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식량구입을 위해 유민화되어 흩어지는 가족들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다.

## IV.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실태

###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주민들은 이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중파굴’ 등으로 불리 왔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정치범수용소’나 ‘형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00호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다. 체제유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번호나 지역고유번호를 붙인 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는 ‘15호 관리소’로 불린다. 또한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예하부대처럼 위장해 놓고 있다. 예컨대 각 정치범수용소는 ‘조선인민경비대 0000부대’로 위장되어 있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탈출한 체험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이하 귀순자) 김용준(1982.1 입국)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여 탈출한 강철환·안혁(1992.8 입국),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명철(1994.10 입국),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원이었던 최동철(1995.12 입국) 등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

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 이후이다. 황장엽(1997.4 입국)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통제구역'이 1958년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이 곳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19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북한당국은 연안과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수용시켜 특별관리함으로써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고, 처형에서 제외된 1만 5,000여 세대 종파 연계자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범의 친척들은 산간 벽지나 농촌지역

으로 쫓겨나 거주를 제한받게 되었다. 귀순자 주영희(1997.5 입국)은 일명 ‘김창봉사건’ 연루자 가족 7~8세대가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로 소개되어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전 민족보위상 대장 김창봉은 1969년 2월 인민군 당 제4기 4차전원회의에서 숙청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같은 수용소는 구 소련의 시베리아 유형장을 능가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

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제44조의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자신의 비판자나 정적계거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감한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넘는다.

제46조의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남북역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구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제47조의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의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동 조항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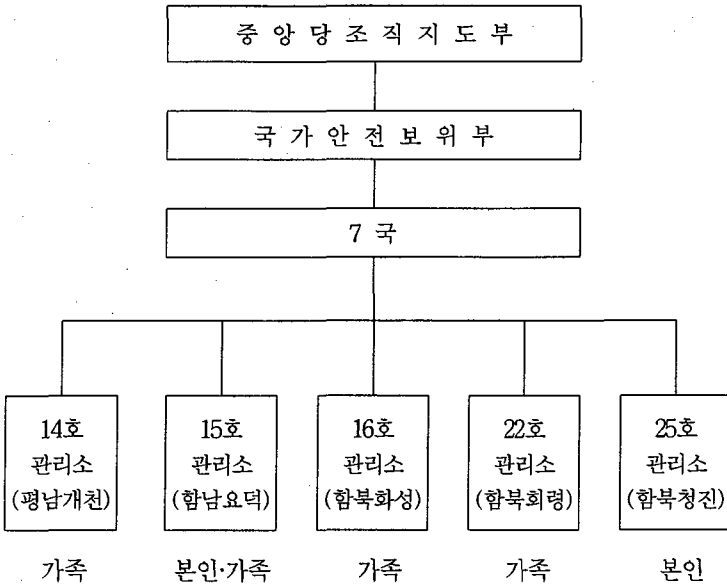
이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순한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온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 소로 통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 명도 이 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시설이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4-1-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표 4-1-1> 해산된 수용소

명칭	위 치	해산일시	해 산 이 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89년 10월	김일성 별장건설
12호	함북 은성 창평로동지구	'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은성 중성로동지구	'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90년 11월	이 유 불 명

\* 귀순자 안명철의 증언에 따른 수용소 현황표임.



또한 안명철은 이들 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승호리수용소」와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정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AI의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국제사면위 조사단원에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

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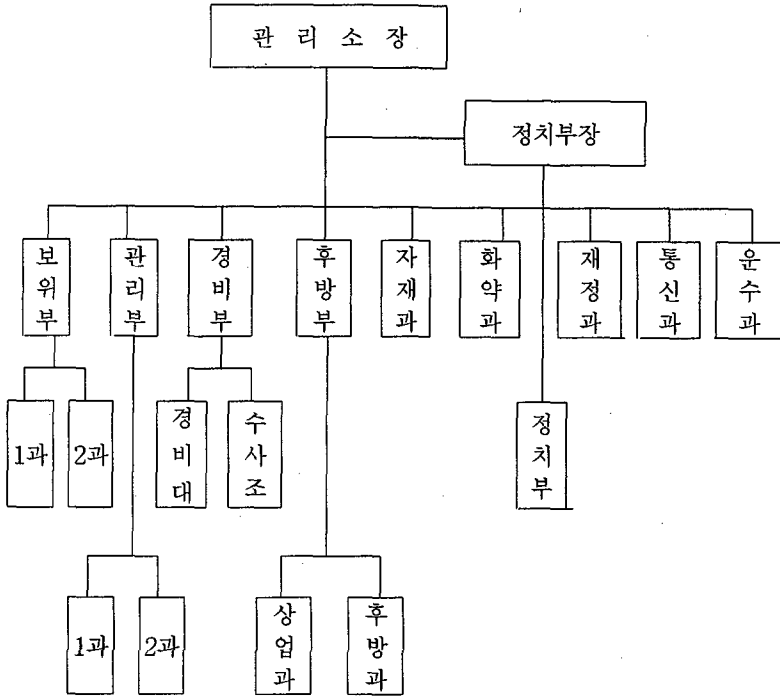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귀순자인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 수용소 조직 및 규모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sup>2</sup>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000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

<그림 4-1-2> 수용소 조직표



\* 북한에서는 수용소라는 표현 대신 '관리소'라고 표현하며 정치범을 '이주자'로 부름.

\*\* 동 조직표는 안명철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것임.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

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 수용소 경비 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경비를 위하여 3~4m 높이로 이중 삼중의 철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망루에는 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 경비부의 중무장한 경비대원은 군견과 함께 수시로 외곽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비취약지역에는 경비대원이 24시간 매복되어 있다. 따라서 탈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간혹 열악한 수용소 환경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재판 없이 공개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진다. 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되는 숫자는 1개소당 매년 약 15명~20명 정도이다.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는데, 이는 다른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수용대상 및 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는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수용이 결정된다. 평양의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가 대표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이다. 주로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성·김정일체제 위해분자를 비롯해서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출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복송교포 등이 색출대상자에 포함된다.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게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유포한 자가 색출대상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용자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려호텔 안내원이었던 ‘김명준’은 외국방문객의 짐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간첩혐의로 마람초대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북한당국은 ‘조국배반죄’라는 죄명을 씌워 그를 요덕수용소에 수용하고 3년간 강제노동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1995년 2월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94 각국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문위에 앉았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도 있다.

귀순자 김광호(1987.3 입국)는 인민반의 주민통제정책으로 겪은 피해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광호 부부는 인민반 반장에게 열쇠를 맡기고 출근을 했다가 당에서 내려 온 유일사상 검열성원의 점검을 받게 되었다. 검열성원과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도서를 점검하였고, 김광호의 집에서 아이의

오즘에 젓어 훼손된 『로작』이라는 책을 발견하였다. 이 책의 맨 앞장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검열성원은 김일성 사진을 잘못 간수했다는 죄명으로 김광호 부부를 고발하였고, 결국 김광호의 가족들은 강제수용소로 추방되었다.

북한에서는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 곳이 상점이나”라는 식의 항의 한 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수감된다. 1992년 10월 평남 순천소재 배급소에서는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여자 한 명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다”는 고함을 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집단항의사태로 발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회안전부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그 여자는 당일 밤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재판절차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를 두려워 하여 당국에 항의하거나 보다 더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어느날 이웃이 야간에 없어지게 되면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더 이상 이들의 행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 수용자 생활실태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일상적으로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명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경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식량난 이전 북한의 일반노동자는 600g의 양을 기준으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이 섞인 배급을 받았으나,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적은 양의 배급을 받았다. 가족세대의 경우 성인 1인은 주식으로 1일 강냉이 550g과 부식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배급받았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정치범에 대한 배급량도 수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신중대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은 더욱 열악해서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이 제공된다. 작업 태만시에는 90g을 더 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돼지나 소 구유통 속에 남아 있는 사료찌꺼기를 먹기도 하며, 심한 경우 쇠뿔 속에 박혀 있는 강냉이나 콩 등을 씻어 먹기도 한다.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이 1년 정도 수용소생활을 하고 나면 영양실조로 인해 몸무게가 평균 15kg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안혁의 경우도 입소 전 75kg이었던 몸무게가 2년만에 38kg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된다.

수용소 내에서는 자가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량이 미미하여 각 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전기가 공급되며, 전력은 불을 켜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식사시간에만 광솔로 불을 밝히기도 한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아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연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추운 날에는 동사자도 발생한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가족세대에게는 수용기간 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만이 지급된다. 작업복은 3년에 한 벌씩 지급되나 독신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노동화가 1년 6개월에 1켤레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솜동화는 5년에 1켤레 지급된다.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겨울에는 천조각으로 얼굴·팔·다리를 감아 생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감염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의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



되는 요양소로 보내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된다. 이같이 방치되어 죽는 사람이 1개 수용소당 매년 약 40명~50명에 이른다.

### 수용소내 집단학살 및 처형 현황

정치범수용소내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점이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1986년 10월 함북 은성의 12호관리소에서는 정치범들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소내 보위원 가족마을을 습격하여 보위원 가족 수백 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 1개 대대병력을 출동시켜 봉기가담자를 포함하여 청장년 약 5,000여 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 강철환·안혁·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같은 처형과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1개소당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폐쇄된 승호리수용소에서는 1개월에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공개처형 대상자가 발생하면 통상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처형 당일 아침 10시경 작업장에 있는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뒤 처형하고 시체는 인근 야산에 매장한다. 안명철은 공개처형이 공포심을 조장하여 수용자들을 순종케 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처형이 너무 잦아 정치범들이 '면역'이 생긴 데다 정치범들의 반발심과 분노만을 유발함에 따라 1984년부터는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많이 실시하게 되

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귀순자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3국 관할의 정치범수용소에 서는 비밀처형과 함께 수용소 의사들에 의해 일본의 731부대나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되었던 것과 유사한 생체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AI의 보고서와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귀순자의 증언 이외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내 북송교포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되어 있었다. 이 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수용자가 매년 약 100~200세대씩 증가되어 1987년에는 요덕군 ‘구읍 및 입석지구’의 북송교포 마을에만 일가족 약 800여 세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한편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 중 과거 일본 조총련 간부나 상공인 등은 가족과 분리되어 다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수감중 만났던 많은 수용자 중 실종자가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강철환은 1977년 실종된 할아버지 ‘강태휴’(전 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장)의 행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한 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 온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들은 자신의 죄명을 모

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발이’라고 냉대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한다. 북송 교포들은 북한주민 출신보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 2. 남북억류자 실태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43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47명(<부록> 참조)이다. 남북자 중에는 1997년 최성남·강연정 남파간첩사건 조사과정에서 1970년 말 북한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밝혀진 당시 고교생 5명도 포함된다.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이후 총 3,662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55명을 돌려 보내고 현재까지 407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가깝게는 1995년 5월 30일 「제86우성호」의 어부 8명(납북 도중 3명 사망)을 강제 납북하였다가 1995년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0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연길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

1997년에 새롭게 밝혀진 남북억류자 김영남·홍건표·이명우·이민교·최승민 등 5명은 그간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김영남(당시 군산공고 재학)은 1978년 8월 5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홍건표(당시 천안상

고 재학)·이명우(당시 천안농고 재학)는 1978년 8월 10일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이민교·최승민(당시 평택태광고교 재학)은 1977년 8월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종되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 고교생으로서 방학 동안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북한으로 귀환하던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되었다.

이 밖에도 아직 신원사항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면위원회(AI)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AI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1994.8.11)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귀순자 안명진(1993 입국)은 남파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텐터디스였던 성경희·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명진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청사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 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사실이 확인된다. 동 위원회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

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요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 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 3.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송교포들을 방문한 사람들과 귀순자들의 증언, 그리고 국제인권 단체들의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송교포와 그 가족들은 북송과 함께 형편 없는 음식과 의복·주택을 제공받았고, 이들 대부분은 현재 까지도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교포들은 북한관리들에 의해 멸시적인 어조로 ‘귀포’, ‘재포’라고 불리우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송교포들은 주민들로부터 경멸적인 대접을 받아 왔다. 이같은 처우 때문에 일부 북송교포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 자살했고, 일부는 중국·러시아 지역으로 탈출하다가 붙잡혀 처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 북송교포와 ‘일본인 처’의 인권문제는 북·일 수교협상의

진행과 맞물려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 인권단체 등은 실종된 북송교포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송교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그간 활동해 오던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 「일본인 처 자유왕래 촉진 의원연맹」 등에 이어 1993년 이후 북한의 민주화와 북송교포 인권 개선을 위한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도쿄), 「구원하라! 북조선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 오사카) 등의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 북송교포 현황

재일 한국인의 북송은 1959년 8월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하여 1959년 12월 처음 시작되었다. 북송교포들의 비참한 삶도 1959년 12월 16일 하오 북송선 제1선이 청진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1984년 7월까지 187차에 걸쳐 일본인 처 6,630여 명(이 중 1,830여 명은 일본국적이었다)을 포함한 일본거주 한국인 9만 3,000여 명이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한 민족주의적인 호소와 '지상낙원'이라는 거짓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 갔다(<표 5-3-1> 참조).

북한당국은 북송 당시 일본인 처들이 2~3년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1997년 11월 북송 일본인 처 1진 15명이 7일 간 일본을 방문하기 이전까지 일본에 돌아오거나 방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많은 북송교포 일본인 처들의 소식이 단절되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의하면,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처형당했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3-1> 북송교포 연도별 추이

연 도	계	북송교포	수반가족	
			일본인	중국인
1959	2,942	2,717	225	
60	49,036	45,094	3,937	5
61	22,801	21,027	1,773	1
62	3,497	3,811	186	
63	2,567	2,402	165	
64	1,822	1,722	99	1
65	2,255	2,159	96	
66	1,860	1,807	53	
67	1,831	1,723	108	
71	1,318	1,260	58	
72	1,003	951	22	
73	704			
74	479			
75	379			
76	256			
77	180			
78	150			
79	126			
80	40	38	2	
81	38	34	4	
82	26	24	2	
83	0			
1984	30			
합 계	93,340			7

\* 1985년 이후에는 북송사업에 의한 집단 북송은 없었음.

\*\* 내역의 공백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임.

### 북송교포의 생활실태

북송교포에 대한 처우는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한 선전과는 다르게 초기부터 가혹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험·능력·희망과는 관계 없이 노동당이 정한 거주지와 직장에 강제 배치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송교포라는 이유로 노동당 입당이 불허되었고, 입당의 지름길이었던 인민군 입대를 거부당했다.

또한 북송된 교포들은 훌륭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북한당국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민성분분류시 대부분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1981년 1월~4월까지 북송교포 요해사업을 실시하여 북송교포들의 성분을 세분화하였다.

북송교포의 생활수준은 평양과 지방 거주자 간에 차이가 크고, 일본 및 해외 거주 친척의 '바라지'(돈이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방의 경우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거나 행방불명, 처형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60~70% 이상의 북송교포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이 없어 생활수준이 보다 나은 북송교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북한주민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북송교포들의 자녀들도 엄격한 규제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일본인 방문자가 북송교포 '김원조'에 대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김원조는 대학입학 승인을 담당할 위원회가 내린 불공정한 결정에 관해 김일성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의 견해로는 그가 당과 관계가 없고 위원회에 대한 그의 가족의 기부가 불충분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입학원서가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반혁명분자라는 혐의를 받아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 후 북송교포들은 그의 소재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는 강제수



용소에 억류되어 있거나 처형되었을 것으로 북송교포들은 믿고 있다.

이같은 북송교포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방문자들에 의해 조금씩 외부로 전달되었다. 어느 한 재일교포는 북송된 친척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친척들이 밝힌 자신들의 생활실상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우리는 살아 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시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모든 자유를 빼앗겼다.……만일 내가 지역경계를 넘어가고 싶으면 배속되어 있는 농업연구소의 주재원에게 정식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 일은 아주 불가능하다.……생활은 일종의 지옥인 셈이다. 밀이나 콩으로 만든 뭍은 죽으로 며칠 간은 버틸 수 있다. 물만 마시며 계속 일한 나날도 있었다. 나는 노예로서 살도록 강요받았다.……그래서 나는 풀, 뱀, 개구리 등을 먹어 보기도 했다.……처음에는 설사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다.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이들의 이러한 실태가 일본으로 알려지자 북송자의 수도 격감하게 되었다(<표 5-3-1> 참조). 그리고 북송교포들은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차 불평 불만의 목소리와 정치적 발언을 높여 갔다.

이에 따라 초창기 감시만 하던 북한당국은 북송교포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귀순자 오수룡(1995.3 입국)의 일가죽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1960년 말부터 일제 단속을 시작했고, 소원이나 항의를 제기한 북송교포들을 수용소에 수감 내지는 공개처형시켰다. 또한 북한 내에서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입지가 약했던 북송교포들을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숙청하였다. 따라서 체포되어서 처형

된 사람 외에도 현재까지 강제수용소에 수감 중인 북송교포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 북송교포와 현금 강요

북한당국은 조총련간부나 상공인의 북송 가족을 ‘인질’로 조총련을 제어·통제하고 ‘자금원’(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북송자의 재일 가족들에게도 입당, 진학, 거주지·직장 배정을 ‘미끼’로 현금모집이나 몰자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북송교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럭, 엔진, 경공업기계, 기타 장비 같은 물건을 보내기도 한다. ‘기부’로 인해 북한의 친척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거액을 현금하면 평양으로도 이주가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스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송교포 중 어떤 사람은 국가에 재정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덕택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정치범 석방과 북송교포와 재일친척들을 상봉시켜 주는 대가로 재일 가족·친지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당 간부나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이 적극 부추기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귀순자들은 증언하였다. 일본에 있는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치범 석방을 위한 ‘기부’ 금액은 5,000만~1억여 엔 정도이다. 또한 귀순자 진광호에 따르면, 북송교포들이 재일 친척과 상봉하기 위해서는 5,000만 엔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북한당국은 김부자의 생일 등 국가행사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송금을 자주 받는 북송교포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각종 훈장 등을 수여하는 대가로

현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 강요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북송교포 일본인 처들의 생활실태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 갔다가 현재까지 한 번도 재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일본인 처’ 문제는 북한·일본 간의 수교논의 초기단계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일본의 ‘과거보상’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 현안이다. 1959년부터 1982년까지 북송된 9만 3,000명 중 6,637명은 일본인 처들이며, 이 중 1,828명은 일본국적 소유자들이었다.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의 발표(1996.12)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북송 일본인 처들은 530여 명이다.

북송된 일본인 처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북한에서 비인도적인 폐쇄 정책과 성분차별로 인해 유형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재일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궁과 부자유, 질병의 고통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들 편지의 주요 내용은 식료품, 의류, 문구류, 의약품 등 생필품 요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생필품 지원 요청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편지에는 생필품 지원 요구 외에 일본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송금요청은 일본인 처들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외채무와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북송 일본인 처들을 이용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일본인 처들이 가족친지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면이 있는 일본인들에게까지 일본돈이나 물품을 보

내 달라고 사정하는 편지들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갑자기 편지를 보내어 아저씨, 아주머니는 누군가 하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요시에의 딸 구미꼬입니다. 아실런지요.....여러분이 입던 헌 것이라도 좋으니 양복 상의, 바지하의, 춘하추동 무엇이든 좋으니까 보내 주십시오.....돈은 정월전에 꼭 30만엔 보내 주세요. 소포로 보내 주세요. 소포는 어른과 아이들이 입을 것 옷감이 라도 좋습니다.....돈도 금년에는 30만엔, 내년에는 그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보내 주세요. <1990년 8월 20일 구미꼬로부터>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인 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회장 이케다 후미코)는 1988년 1월부터 일본공산당을 제외한 전 국회의원과 일반국민들의 후원 아래 식료품, 의류, 문구류 등의 생필품을 북송 일본인 처들에게 우송해 왔다.

동 단체가 매년 450~600여 상자의 구호품을 보낸 결과 일본인 처들의 감사 편지의 수도 늘기 시작했다. 이들 편지들에는 “30년만에 설탕을 맛보게 해주어 고마웠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다.

후미코씨라고 하는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우동, 통조림, 설탕은 설날 먹으려고 숨겨 두었습니다. 30년만에 처음 대하는 것들입니다. 옷도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바지 2, 원피스 1, 슈미즈 1, 스커트 2, 연장 등도 없습니다. 벗은 5개 있습니다.....이제부터 보내실 때는 절대로 우편으로 부쳐서는 안됩니다. 세금이 너무나 비싸 찾을 수가 없습니다.....미제와 남조선 것은 전부 압수되니 넣지 말아주십시오. <1989년 11월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스즈키 다케노 올림>

1997년 북송 일본인 처 1진 15명이 7일(11.8~14)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북한이 일본적십자사와의 북송협정 당시 2~3년만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모두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야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이들은 일본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지적하였듯이 북한당국에 의해 선발된 ‘모범생’, ‘우등생’ 처럼 “40년 가까이 민족차별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냈으며 아직도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북한당국은 일본인 처들의 고향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간 일본인 처들이 차별받아 왔다는 국제사회와 일본내 여론을 무마하는 한편, 당면한 식량난에 대한 지원과 향후 지속되는 북·일 수교교섭의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 북한이탈주민 현황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상당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약 1,600명 이상이고, 이 중 현재까지 우리 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경우는 약 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에게 발각될 경우 강제송환당하고 있다. 그리고 송환된 북한이탈

주민들은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수용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난민’ 자격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북한주민의 가장 유력한 탈출지인 중국·러시아 정부는 이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포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당국에 인계조차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공안과 북한 안전원들을 피해 은신하고 있으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경지대를 ‘전선지대’로 선포하는 등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주민 중 가재도구를 장마당에 파는 사람을 탈출용의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거나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현지에 파견하여 북한이탈주민 색출·체포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치도 취하고 있다. 회유성 조치로서 대표적인 것은 귀환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미처벌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같은 선전을 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통제체제의 강화와 함께 해외체류자를 소환·재교육에 관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북한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장승일 전

이집트대사 등 엘리트계층의 탈출이 잇따르자 해외파견자들과 그 가족들을 긴급 소환하여 재교육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89년 10월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전 해외공관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 연구원, 유학생을 소환할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1997년 말 현재까지 국내입국한 귀순자는 총 866명이고, 사망자나 해외이민자를 제외하면 685명이다. 귀순자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86명을 기록하였다.

귀순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나 장승길 전 이집트대사와 같은 최고위층의 북한 탈출은 예년에 없었던 현상이다. 또한 김원형(1997.5 입국)이나 이용운(1997.12 입국)의 경우 처럼 국내나 해외 거주 가족들이 탈출을 적극 도운 것도 예년에 없었던 현상이다.

국내입국한 귀순자들만을 대상으로 탈북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입국한 귀순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시킨 경우도 있었다. 북송교포 2세인 홍진희(1996.1 입국)는 어머니 주영희와 두 동생 홍경화·홍진명(1997.5 입국)을 탈출시켰으며, 정현(1990.8 입국)은 어머니와 두 동생을 탈출시켰다.

탈북규모를 보면 대규모 가족단위가 크게 증가하였다. 김경호(1996.12 입국) 일가족 17명에 이어 김영진·유송일(1997.1 입국) 두 가족 8명, 김원형·안선국(1997.5 입국) 두 가족 14명, 이용운 가족 8명 등의 탈출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인다.

탈북유형도 비무장지대나 제3국을 경유한 방법 외에 선박을 타고 해상을 경유하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감시망을 뚫고 탈출하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상을 통한 탈출은 감시망의 허술보다는 필사의 탈북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순자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해졌다. 황장엽과 같은 고위 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 북한이탈 배경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97년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은 주민들의 탈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식량배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전반적인 경제난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구호나 경제원조와 같은 응급처방으로 단기내 회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아와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북한주민의 탈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은 탈북을 촉진시키고 있다. 조선족 보따리 장수와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유학생 및 해외파견자들의 북한 귀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중국 및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한국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비교의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부정보의 유입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탈북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는 탈북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발각될 위험에 처한 경우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일탈현상과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이미 물리적 통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탈북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탈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96년초 현성일 부부, 차성근 귀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난으로 인한 해외공관의 자금난과 공관원들의 궁핍한 생활, 마약 등의 밀수·밀매 및 위조미화의 제작·유통, 공관내 직원들의 갈등 증폭 및 상호감사·말고, 강제송환 등은 공관원들의 탈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화벌이사업중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해외체류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파견된 해외근무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물리력만으로는 통제하기 힘들다.

###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은 1,300여 명 이상으로서 이들 대부분은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성) 거주 친인척을 근거지로 잡역이나 영농지원을 하면서 은신하고 있고, 소수는 홍콩·베트남·태국 등으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에 의한 밀고 및 특무(북한의 정보원 내지 기관원)와 중국 공안당국의 색출활동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체포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강제송환된다. 『동아일보』(1996.12.26)가 입수한 「<길림성 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提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1994~95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당국은 탈북주민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에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

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들의 추방이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국가에 위협한 존재가 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난민협약」 33조 제2항).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강제 송환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강제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민족반역자’로 분류되어 사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은 형법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행위를 ‘조국반역행위’로 규정(제47조)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약(B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규약 제 12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은 3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탈출한 북한주민들로서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러시아 국경지역을 전전하며 의류 등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이나 한국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다. 러시아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한 난민지위 획득 등 제도적으로 국내입국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 지방당국의 관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북한노동자들이 구 소련지역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당시 구소련의 당 서기장였던 브레즈네프와 북한의 김일성이 체결한 「별목 협정」에 기초해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지역에 별목장이 설치된 이후 부터이다. 한때 2만여 명에 달했던 북한 별목공의 수는 현재 1,500~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7년 9월 별목 합작사업 축소조정을 위한 협정서를 채택하였다.

별목장을 제외하고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근교의 광산, 건설현장 등에 많은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광산현장에서 건축노동자로 일했던 귀순자 윤성철(1996.3 입국)은 1990년 당시 자신이 속했던 현장만 해도 11개 기업소에 2,000여 명의 북한노동자가 파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하여 노보르비르스크 근교의 광산에서 3,000여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작업현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구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전후부터이다. 1990년 전후 목재 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축소됨에 따라 북한 임업대표부가 잉여 노동력을 작업장 밖으로 파견하여 소위 ‘외화벌이’나 ‘부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안전원의 지속적인 추적을 받고 있으며, 체포되어 송환되면 사형도 감수해야 한다. 과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구 소련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비밀의 정서」에 의거하여 북한당국으로 인계되었다. 이 비밀의정서는 1993년 러시아 최고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세르게이 코발료프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 북한 안전원의 북

한이탈주민 추적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입업협정(1995.2 체결) 제14조 5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사적인 또는 외화벌이사업은 러시아 지방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1995년 UNHCR은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벌목공에 대해 최초로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하였다. 유엔기구가 국제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탈출벌목공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북한이 강력히 제기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범법자라는 주장과 한국으로의 망명이 한국정부에 의한 납치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처리를 철저히 통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같은 러시아의 정책은 러시아가 1993년 2월에 가입한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과 배치된다.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조차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하바로프스크 출입국관리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본 적이 없고, 외무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사법권하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AI는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는 다르게 러시아 지방당국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을 송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러시아경찰들이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와 폭력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하고 있으며, UNHCR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한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AI는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

민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도 러시아당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AI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들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지역인권단체가 거의 없으며, 아무도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작업장을 탈출할 때 러시아경찰의 송환조치를 우려해 신분증(거주허가증)을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부재는 오히려 송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 AI는 1993년 러시아여성과의 혼인을 신고하려 했던 ‘최경호’라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안전원에 인계된다. 귀순자 윤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안전원은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대부분 한국으로의 탈출기도, 한국방송 청취 등의 죄명 기재)에 강제로 날인시킨 후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강제송환은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원이나 안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서류는 출신지역 도 정치부로 이송된다. 북한으로 이송할 때에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깁스를 하거나 족쇄를 채운다.

송환되는 과정에서 반항하게 되면 즉결 처형된다. 1996년 5월 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당국에 넘겨졌던 북한이탈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또한 AI는 ‘송창근’, ‘김선호’ 등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송환되어 처형되거나 송환 도중 자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I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가 송환되지 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뒤 몰도바 소재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I는 북한당국에 송환자 처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한편, 9월에는 러시아 내의 북

한이탈주민 인권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였다.

# 부 록



빈 면

## 1. 남북 및 남북억류자 현황

구 분	계	어부	KAL	I-2정	기타
남 북	3743	3662	51	20	10
억 류	447	407	12	20	8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남북억류자는 미포함

\*\* 상기 통계는 사망자도 포함

## 2. 연도별 남북억류자 현황

연도	억류자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1955	10	10	1972	66	390
1957	2	12	1973	6	396
1958	23	35	1974	28	424
1964	16	51	1975	(1)	425
1965	22	73	1977	2(1)	428
1966	2	75	1978	3	431
1967	43	118	1979	1	432
1968	131	249	1980	(1)	433
1969	21	270	1987	13	446
1970	38	308	1995	1	447
1971	16	324			

\* ( ) 수치는 미확인 사항임

## 3. 해상납북역류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	대성호	'55.5.28	김순귀	47	경기 용진
2	"	"	김장현	44	"
3	"	"	박표만	41	황해 해주
4	"	"	유의택	42	"
5	"	"	유장화	49	경기 용진
6	"	"	윤성우	41	황해 해주
7	"	"	이산음	41	"
8	"	"	정대현	41	"
9	"	"	조종일	40	"
10	"	"	황득식	42	경기 용진
11	해룡호	'57.11.9	마승섭	44	강원 고성
12	덕길호	'57.11.9	김성주	48	경남 통영
13	명규호	'58.4.28	박동근	33	전북 남원
14	"	"	홍복동	20	경기 용진
15	평화호	'58.4.29	김영복	20	경기 부천
16	"	"	박영근	32	강원 고성
17	다복호	'58.4.30	김명선	47	경기 연백
18	"	"	김창현	32	평북 철산
19	풍영호	'58.4.30	한진용	24	경기 부천
20	신흥호	'58.4.30	박세운	19	경기 강화
21	신복2호	'58.5.14	장순중	18	경남 삼천포
22	신명호	58.11.7	송상인	49	함남
23	"	"	송성락	52	강원 고성
24	"	"	신광필	37	함남
25	금구호	'58.11.7	박동준	49	"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6	금구호	'58.11.7	이용택	46	함남
27	"	"	허 준	45	"
28	어성호	'58.12.6	김범주	18	강원 고성
29	"	"	김여훈	18	"
30	하영호	'58.12.6	김명은	46	경북 울릉
31	"	"	김유태	34	강원 고성
32	"	"	엄광섭	46	경북 울릉
33	금능호	'58.12.6	김개락	28	함남
34	"	"	윤승범	42	강원 홍천
35	광영호	'58.12.6	김원로	53	강원 고성
36	보승2호	'64.3.1	곽중호	36	"
37	"	"	곽형주	32	"
38	"	"	권오동	34	"
39	"	"	박태길	31	"
40	"	"	송은석	48	미상
41	"	"	이종윤	34	강원 고성
42	"	"	임귀복	47	"
43	"	"	최동길	17	"
44	"	"	최문길	23	"
45	"	"	최석용	43	"
46	"	"	최준수	39	"
47	강화호	'64.7.19	박기정	26	경기 강화
48	"	"	한상준	28	"
49	부영호	'64.7.29	문성천	38	황해 장연
50	신성2호	'64.10.16	김광호	22	경남 밀양
51	"	"	유한복	20	경기 평택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52	광명호	'65.5.8	최동기	41	경북
53	대영호	'65.5.31	이정웅	22	경기 용진
54	승리호	'65.10.29	나용열	28	인천 동구
55	"	"	현근화	33	강원
56	용복호	'65.10.29	김분임	61	경기 강화
57	"	"	문정숙	25	"
58	용미호	'65.10.29	정영남	38	"
59	춘곡호	'65.11.15	정창규	35	경남 통영
60	"	"	천태옥	34	경북 영덕
61	명덕호	'65.11.20	김경수	18	강원 명주
62	"	"	김성만	32	강원 양양
63	"	"	김장원	16	강원 속초
64	"	"	김정구	19	경북 영덕
65	"	"	이병기	16	강원 고성
66	"	"	이창영	18	강원 명주
67	"	"	주인복	46	강원 고성
68	"	"	최영중	17	"
69	"	"	한동순	26	경북 영덕
70	덕삼호	'65.11.20	서봉래	43	강원 고성
71	대양79호	'65.11.26	김태운	50	미상
72	행영호	'65.11.30	김종옥	28	강원 양양
73	"	"	서석민	18	경남 거제
74	영농호	'66.1.26	황창섭	54	미상
75	대성호	'66.6.24	박팔만	17	전남 해남
76	천대11호	'67.4.12	김대곤	27	경북 경주
77	"	"	김상수	30	미상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78	천대11호	'67.4.12	김영일	23	경남 삼천포
79	"	"	김장훈	31	경북 경주
80	"	"	김홍일	25	경남 산청
81	"	"	남북이	36	경북 영덕
82	"	"	이정식	34	미상
83	"	"	장길용	27	"
84	"	"	장영식	33	"
85	"	"	정학명	37	"
86	"	"	진정팔	26	경북 영일
87	"	"	최명환	34	전남 완도
88	"	"	최중등	25	경남 거제
89	"	"	최효길	29	미상
90	창성호	'67.5.23	윤경구	18	충남 서산
91	"	"	홍승균	16	충남 태안
92	승용호	'67.5.28	이선일	17	전북 옥구
93	태영호	'67.5.29	김옥준	25	충남 서산
94	"	"	최창의	19	충남 태안
95	풍복호	'67.6.5	문경식	16	전북 군산
96	"	"	최원모	57	"
97	부성3호	'67.6.15	김봉수	27	서울 용산
98	정진호	'67.7.22	이기출	18	경북 칠곡
99	어성호	'67.11.3	오원섭	41	강원 고성
100	거성호	'67.11.3	이진영	25	"
101	금윤희	'67.11.3	김자준	37	"
102	"	"	박규채	36	경남 남해
103	"	"	박락선	28	강원 고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04	금윤호	'67.11.3	이창식	29	강원 고성
105	"	"	이태수	32	강원 명주
106	"	"	장재천	26	강원 고성
107	해양호	'67.11.3	김상준	23	강원 고성
108	"	"	김성재	39	강원 삼척
109	"	"	마기덕	26	경남 창원
110	"	"	박능출	37	경남 거제
111	"	"	홍순권	19	강원 명주
112	청진호	'67.12.20	김남현	27	강원 고성
113	"	"	김성호	29	"
114	"	"	기양덕	29	"
115	"	"	오명복	29	강원 명주
116	"	"	이정해	48	강원 속초
117	"	"	이춘식	30	강원 고성
118	광명호	'67.12.25	한해진	40	강원 고성
119	경호	'68.1.6	김주철	29	강원 동해
120	홍익호	'68.1.6	양상을	41	강원 명주
121	행덕호	'68.1.11	박복택	21	경남 충무
122	기성호	'68.3.10	서수중	27	강원 속초
123	창영호	'68.4.17	강명보	18	경남 통영
124	"	"	김학래	26	강원 양양
125	"	"	김홍록	16	강원 고성
126	"	"	이영석	18	경남 남해
127	"	"	이옥진	43	전남 여수
128	"	"	이태용	49	강원 양양
129	"	"	정장백	19	강원 고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30	종진호	'68.4.27	김용봉	17	강원 고성
131	"	"	윤무출	38	"
132	"	"	임규철	25	강원 강릉
133	"	"	정연태	27	강원 삼척
134	신진호	'68.5.9	김정일	32	강원 명주
135	"	"	오성재	37	서울 성동
136	대성호	'68.5.23	김홍균	24	강원 명주
137	"	"	임병혁	40	강원 양양
138	"	"	한기들	14	강원 명주
139	춘덕3호	'68.5.29	김재구	21	전남 목포
140	성운호	'68.5.29	김명학	47	경북 울진
141	"	"	김수근	32	경북 영일
142	"	"	박만복	43	강원 명주
143	"	"	이상원	42	"
144	"	"	장창수	35	강원 강릉
145	순덕호	'68.6.1	공문익	37	경기 강화
146	부길호	'68.6.6	김경두	34	전남 여천
147	"	"	김길오	32	전남 완도
148	"	"	김일오	26	전남 여천
149	"	"	박명옥	16	"
150	영신호	'68.6.6	고주봉	30	전남 영암
151	"	"	김이배	31	전남 진도
152	"	"	오관철	32	전북 장수
153	"	"	최동진	20	충남 보령
154	덕산호	'68.6.6	고종현	21	경기 부천
155	"	"	김용길	18	전남 해남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56	덕산호	'68.6.6	서종술	37	경기 부천
157	"	"	이선주	26	충남 당진
158	"	"	이일남	27	경기 부천
159	풍년호	'68.6.8	고준수	25	강원 고성
160	"	"	김병호	17	경남 김해
161	"	"	김영옥	13	강원 고성
162	"	"	김용기	19	경북 예천
163	"	"	신성옥	26	강원 삼척
164	"	"	박형중	15	전남 고흥
165	"	"	이운길	13	강원 고성
166	"	"	전인만	15	"
167	"	"	조문호	33	"
168	"	"	주재근	25	"
169	"	"	최동일	26	전남 완도
170	영신호	'68.6.12	김도경	23	전남 목포
171	"	"	서용식	27	전남 영광
172	해양호	'68.6.16	김광운	36	경기 부천
173	취영호	'68.6.17	김광근	24	경기 용진
174	"	"	손은주	22	경기 부천
175	"	"	손철순	19	경기 용진
176	복성6호	'68.6.17	김영구	21	경기 강화
177	"	"	유병춘	31	인천 동구
178	"	"	홍상표	20	경기 강화
179	성북2호	'68.6.21	김창현	45	인천 중구
180	"	"	심광식	28	전북 군산
181	경흥호	'68.6.23	김진경	37	경기 용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82	경홍호	'68.6.23	오남문	30	서울
183	"	"	이기준	27	경기 용진
184	"	"	이일환	41	인천 중구
185	경북호	'68.6.29	김대만	25	전남 광주
186	"	"	이상은	21	경기 강화
187	"	"	차종석	22	전남 신안
188	금융호	'68.7.2	고종환	16	북제주 우도
189	"	"	김남호	18	강원 양양
190	"	"	김명희	13	경기 가평
191	"	"	김용수	15	강원 고성
192	"	"	윤능산	17	북제주 우도
193	"	"	윤두찬	39	전북 완주
194	"	"	이은권	42	경남 울산
195	"	"	주영삼	17	강원 속초
196	"	"	함태천	29	강원 고성
197	신양호	'68.7.2	곽도상	13	충북 영동
198	"	"	김응권	19	경남 통영
199	"	"	박성문	25	강원 고성
200	"	"	장 면	14	"
201	"	"	황두호	18	전북 남원
202	창명호	'68.7.2	김철규	14	강원 고성
203	"	"	선우석	52	서울 성동
204	"	"	이종범	47	강원 고성
205	"	"	이춘만	31	서울 성동
206	"	"	유강열	32	강원 고성
207	"	"	조규영	13	"

번호	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08	백구17호	'68.7.4	윤귀남	21	전남 진도
209	"	"	이영철	27	전남 신안
210	태양호	'68.7.10	김진영	48	경남 울주
211	"	"	조석원	15	전북 김제
212	만복호	'68.7.10	강봉운	64	강원 고성
213	"	"	박홍식	17	경북 영덕
214	"	"	장진구	13	강원 고성
215	"	"	최승복	13	"
216	"	"	최원수	16	경북 영일
217	가덕호	'68.7.10	김상운	35	충북 보은
218	"	"	박종업	55	강원 고성
219	"	"	이해준	34	충남 부여
220	"	"	전석구	24	강원 인제
221	덕성호	'68.7.12	김남국	20	전남 진도
222	"	"	김춘식	26	전남 신안
223	"	"	여인억	46	인천 중구
224	"	"	이양진	23	전남 신안
225	대복1호	'68.8.6	김재욱	47	강원 고성
226	"	"	한택선	35	"
227	"	"	황명삼	25	경북 울릉
228	덕수2호	'68.8.7	강명화	25	경남 남해
229	"	"	김광수	25	"
230	"	"	김인철	17	경남 충무
231	"	"	엄기만	12	강원 속초
232	"	"	장을선	49	충북 청주
233	"	"	정한수	37	경남 진양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34	용명호	'68.10.30	함기남	20	강원 고성
235	해진호	'68.10.30	김종우	27	경북 월성
236	영창호	'68.10.30	김이득	22	경북 영일
237	"	"	임재동	29	경남 거제
238	"	"	진기봉	22	강원 강릉
239	어재호	'68.10.30	전만수	27	강원 고성
240	양진호	'68.11.7	고순철	29	강원 명주
241	"	"	이영기	22	"
242	동일호	'68.11.7	이태운	25	경북 영덕
243	해승호	'68.11.7	김동주	22	강원 명주
244	준호	'68.11.7	문원표	46	"
245	원일호	'68.11.7	이기석	26	"
246	영덕호	'68.11.8	안수선	21	경북 영덕
247	수진호	'68.11.8	전도민	17	강원 양양
248	"	"	정연배	42	경남 진주
249	풍성호	'68.11.8	김종순	22	강원 고성
250	신흥2호	'69.5.1	한종남	19	전남 진도
251	홍덕호	'69.5.5	이광원	18	전남 신안
252	순호	'69.5.10	이동우	27	충남 홍성
253	"	"	임판길	31	전북 옥구
254	"	"	정홍해	28	충남 보령
255	신성호	'69.6.10	이덕표	37	충남 서천
256	"	"	정오석	30	전북 옥구
257	"	"	천문석	38	전북 부안
258	"	"	최두수	35	경남 남해
259	봉산21호	'70.4.29	강병일	29	충남 당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60	봉산21호	'70.4.29	김태량	27	전남 완도
261	"	"	엄승영	34	경남 울주
262	"	"	정영철	15	전남 진도
263	"	"	최종을	19	전남 강진
264	봉산22호	'70.4.29	박휘만	22	경북 포항
265	"	"	이재근	33	경남 울산
266	"	"	황석균	30	충남 태안
267	금강산호	'70.6.22	권혁근	33	강원 속초
268	"	"	김홍동	14	강원 정선
269	"	"	오관수	28	광주 광산
270	"	"	이순봉	28	경북 울진
271	남일7호	'70.6.30	김일영	36	경남 마산
272	만복1호	'70.7.8	사명남	33	경기 용진
273	만복2호	'70.7.8	최상일	36	"
274	무진호	'70.7.8	민경신	33	"
275	"	"	변호신	33	"
276	"	"	장춘반	47	"
277	휘영37호	'71.1.6	김상대	28	경남 거제
278	"	"	김인천	27	경기 용진
279	"	"	김창덕	19	경남 거제
280	"	"	박길운	23	경남 남해
281	"	"	박동순	38	"
282	"	"	박정구	34	전북 군산
283	"	"	박천향	42	경남 남해
284	"	"	송옥천	29	"
285	"	"	정목살이	28	"

번호	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86	휘영37호	'71.1.6	정세울	48	경남 거제
287	"	"	정완상	19	"
288	"	"	황영식	50	"
289	창동1호	'71.5.14	김재수	26	강원 양양
290	해행1호	'71.12.25	강흥기	39	전남 여천
291	"	"	김봉식	32	경남 통영
292	"	"	황영천	26	경기 가평
293	동진호	'72.1.10	김정옥	26	전남 여천
294	안영35호	'72.2.4	김계홍	57	전남 완도
295	"	"	김달영	36	"
296	"	"	김소웅	28	부산 영도
297	"	"	김철주	39	경남 남해
298	"	"	박달모	23	"
299	"	"	박장현	20	전남 여천
300	"	"	신태용	27	전남 보성
301	"	"	위춘환	35	전남 완도
302	"	"	이상록	19	경북 영풍
303	"	"	이평일	44	전남 여천
304	"	"	전승철	22	부산 서대신
305	"	"	정동배	18	서울 종로
306	"	"	정태갑	33	경남 남해
307	"	"	최부영	19	"
308	안영36호	'72.2.4	공순경	41	"
309	"	"	김동식	36	경북 칠곡
310	"	"	김두선	33	경남 남해
311	"	"	김석만	25	전남 보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12	안영36호	'72.2.4	김일봉	21	경남 남해
313	"	"	김임권	31	"
314	"	"	김휘남	23	전남 완도
315	"	"	동병순	18	경남 남해
316	"	"	배현호	29	"
317	"	"	박복만	40	경남 통영
318	"	"	박상국	26	"
319	"	"	이홍섭	32	경남 남해
320	금해11호	'72.5.4	강여진	16	경기 용진
321	해영2호	'72.5.12	김순식	48	경남 김해
322	유흥호	'72.6.9	김정길	30	강원 명주
323	"	"	남무수	32	강원 평창
324	"	"	남정열	39	강원 속초
325	"	"	방승도	37	경남 창원
326	"	"	배민호	48	경남 진해
327	"	"	이수석	30	강원 속초
328	"	"	이원재	32	전남 해남
329	"	"	임창규	19	강원 명주
330	"	"	최성현	44	경북 경주
331	금성3호	'72.8.14	김영식	21	경남 남해
332	"	"	송래규	35	경북 영일
333	일진6호	'72.8.21	김대봉	31	"
334	"	"	이석룡	38	경남 거제
335	오대양61호	'72.12.28	김옥률	17	"
336	"	"	김용철	45	경기 수원
337	"	"	김의준	25	경남 거제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38	오대양61호	'72.12.28	김일만	17	경남 거제
339	"	"	김종원	47	"
340	"	"	김천구	39	"
341	"	"	김태준	17	"
342	"	"	박두남	38	"
343	"	"	박양수	14	"
344	"	"	박영석	34	"
345	"	"	박영종	22	"
346	"	"	박용갑	32	경남 남해
347	"	"	서석기	32	경남 거제
348	"	"	이공희	20	서울 영등포
349	"	"	이재명	34	경남 거제
350	"	"	최영근	49	"
351	오대양62호	'72.12.28	강소동	29	"
352	"	"	박두현	35	"
353	"	"	서영구	38	부산 영도
354	"	"	안수영	37	전북 전주
355	"	"	유경춘	45	경남 거제
356	"	"	정건목	20	경남 남해
357	"	"	정도평	26	경남 거제
358	"	"	정형래	20	"
359	신진1호	'73.7.27	김순남	25	경기 용진
360	"	"	김영희	47	미상
361	"	"	나기용	52	경기 용진
362	"	"	서득수	37	경북 상주
363	"	"	조순래	32	경기 용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64	신진1호	'73.7.27	조인우	18	경기 용진
365	수원32호	'74.2.15	김근식	19	전남 진도
366	"	"	김생림	49	"
367	"	"	김월근	26	전남 광주
368	"	"	김용기	34	전남 진도
369	"	"	김용길	18	전남 완도
370	"	"	김종관	23	전남 해도
371	"	"	박경원	31	전남 진도
372	"	"	송민경	53	경남 남해
373	"	"	안병진	28	경북 상주
374	"	"	유용석	22	전북 완주
375	"	"	이대홍	20	경북 남해
376	"	"	이성용	28	전남 영암
377	"	"	이천석	28	경북 영덕
378	"	"	정유석	30	전남 고흥
379	수원33호	'74.2.15	고광희	34	인천 북성
380	"	"	기노석	18	전남 무안
381	"	"	김용건	27	경북 군위
382	"	"	김재봉	21	전남 진도
383	"	"	김중식	27	"
384	"	"	김현남	24	"
385	"	"	박남주	36	"
386	"	"	박종주	45	인천 남구
387	"	"	백홍선	27	전남 장흥
388	"	"	임태환	44	부산 영도
389	"	"	장영환	27	경기 군포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90	수원33호	'74.2.15	정중윤	34	전남 진도
391	"	"	최복열	33	"
392	"	"	최영철	18	충남 청양
393	천광호	'75.8.8	김두익	45	강원 원주
394	통영호	'77.5.10	최장근	35	경남 충무
395	해왕7호	'80.1.26	김환용	22	전남 완도
396	동진27호	'87.1.15	강희근	35	경기 강화
397	"	"	김순근	44	전남 여수
398	"	"	김상섭	35	전남 고흥
399	"	"	김영현	22	부산 진구
400	"	"	노성호	25	충북 청원
401	"	"	박광현	38	경남 함양
402	"	"	양용식	27	전남 담양
403	"	"	임국재	32	경북 안동
404	"	"	정일남	30	전남 고흥
405	"	"	진영호	26	경남 합천
406	"	"	최종석	40	부산 사하
407	"	"	추영수	55	인천 동구

## 4. 해군 1-2정 승무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408	해군 1-2정	'70.6.5	권덕찬	22	전남 광주
409	"	"	김기강	28	강원 원주
410	"	"	김태중	23	경기 평택
411	"	"	도종무	22	경북 청도
412	"	"	맹길수	24	전남 해남
413	"	"	문석영	23	제주
414	"	"	박재수	23	경남 밀양
415	"	"	서금성	22	인천 동구
416	"	"	신영훈	24	서울 중구
417	"	"	이덕주	29	경남 진양
418	"	"	이재영	23	전북 정읍
419	"	"	임성우	37	경북 의성
420	"	"	전해열	21	경북 청도
421	"	"	정광모	23	서울 중구
422	"	"	정수일	41	"
423	"	"	정원석	24	부산 서구
424	"	"	조진오	23	부산 해운대
425	"	"	조태봉	34	경기 연백
426	"	"	최응호	25	인천 중구
427	"	"	함영주	24	서울 중구

## 5. 항공납북억류자

번호	항공기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428	KAL	'69.12.11	김봉주	33	충남 아산
429	"	"	성경희	28	서울 종로
430	"	"	유병화	42	서울 용산
431	"	"	이동기	53	강원 강릉
432	"	"	임철수	55	강원 양구
433	"	"	장기영	48	서울 종로
434	"	"	정경숙	28	서울 중구
435	"	"	제헌덕	43	서울 성북
436	"	"	조옥희	48	경기 평택
437	"	"	최석만	42	서울 영등포
438	"	"	최정웅	32	강원 원주
439	"	"	황 원	38	인천 동구

## 6. 기타

번호	납북장소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주소)
440	전남 홍도	'77.8	이민교	18	서울 성동
441	"	"	최승민	17	
442	노르웨이	'78.4.13	고상문	29	
443	군산 선유도	'78.8.5	김영남	16	경남 마산 (서울 구로)
444	전남 홍도	'78.8.10	이명우	17	
445	"	"	홍건표	17	
446	오스트리아	'87.7.20	이재환	24	
447	중국	'95.7.9	안승운	50	

## 7. 납북억류자 및 월북자 정치범수용소 수용 현황

성명	전직 및 입북경위, 수감 실태
강중석	서독광부. 1971년 북한 정보원에 의해 강제납북
고상문	전 수도여고 교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연수중 여권분실을 신고하려 한국대사관을 찾던 중 택시기사의 착오로 북한대사관에 들어갔다가 북한 공관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 AI가 송호리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발표한 직후 북한은 1994년 8월 「평양방송」을 통해 고씨가 자진월북하여 지리학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고씨 가족이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북한은 고씨가 북한에서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회신내용을 유엔을 통해 1995년 고씨의 가족들에게 통보해 옴. 그러나 정부는 북한측 답변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씨의 송환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김보겸	택시기사.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 납북.
노준우	농부.
신숙자	간호원. 남편 오길남을 따라 1985년 11월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 평양 관광거리에서 살다가 1986년 11월 오길남이 북한을 탈출하자, 딸 2명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감. 1988년 1월 부터 1989년 2월까지 요덕수용소내 결핵요양소 간호원으로 일함. 북한당국은 수감사실 부인.
염규환	제약회사 직원. 1981년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갔다 조총련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 납북.
유성근	주서독 한국대사관 노무관. 1971년 4월 서베를린을 여행하다 북한 공작원에게 강제 납북됨. 당시 부인 정순섭씨와 두 딸 경희(7살), 진희(1살)양도 함께 납북.
이장수	조병욱과 함께 월북.
이준광	육군 중령.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월북.
이치수	농부.
정종도	재미 과학자. 인도네시아를 여행중 북한 공관원에 의해 강제 납북. 북한당국은 198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조병욱	해군 수송기지창 근무원. 1976년 10월 월북.

\*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 및 귀순자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 8.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 현황

성 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강대용	생존불명.
강덕현	일본밀항후 북송. 아들(강명일, 강명학) 생존.
강수호	출소. 북한당국은 1991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강용수	노동교양소로 이동.
강태휴	1977년 행방불명(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 회장, 귀순자 강철환의 조부). 아들 강지명(강철환의 부) 영양실조로 사망. 아들(강화정, 강복남, 강창남), 손자(강미호) 생존.
고대기	생존불명.
고철림	조총련간부 아들. 1977년부터 수용소생활. 父 행방불명.
고 흠	조총련간부(교토본부 간부). 妻·아들(고철공, 고철영, 고철배, 고철림)·딸1 생존.
곽승일	母(일본인) 수용소내에서 행방불명. 父(조총련간부)·妹(곽성혜, 곽성아)생존.
곽 철 (곽종구)	조총련 오오사카 정치부 부부장. 弟(곽영호)·妻(신성옥)·아들(곽성일, 곽성균)·딸(곽향숙, 곽인숙, 곽지숙) 생존. 父는 펠라그라병으로 수용소에서 사망.
권봉학	조총련 중앙간부. 노동교양소로 이동.
김금치	가족 나고야 거주.
김병훈	노동교양소로 이동. 북한당국은 196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김성치	조총련간부. 14년 동안 수용소 생활, 출소후 자살.
김애량	남편 행방불명. 아들(백덕수) 생존.
김순란	남편(조총련 교토본부 간부) 행방불명.
김영길	오페라 가수. 북한당국은 1986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성명	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김옥량	남편(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딸(허민향, 허민애, 허민희) 생존.
김점명	일본밀항후 복송. 월남참전용사.
김진호	1990년 현재 생존확인. 북한당국은 1977년 출국했다고 AI에 답변.
김천해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북한당국은 196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민영일	조총련 니이가타본부 부위원장(조직부장). 폐결핵으로 사망가능성. 북한당국은 1973년 출국했다고 AI에 답변.
민홍식	父(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1976년 행방불명. 母·弟(민권식) 생존.
박강태	복송 이후 신의주에서 기자로 활동.
박기영	학자. 妻(일본인)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딸(박순옥)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사망가능성.
박기현	조총련 교토본부 초청위원장. 1976년 피검후 행방불명. 妻 사망. 맏아들 행방불명. 아들(박태윤)·딸(박명숙, 박남숙, 박유숙) 생존.
박 무	사망가능성. 북한당국은 만수대 창작사 지도원으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AI에 답변.
박상기	김재원(함흥 경영위원회) 등과 1년간 수용소 생활중 간첩혐의로 행방불명.
박순달	남편(조총련 오사카본부 간부) 행방불명. 아들(현룡, 현덕룡)·딸(현인순, 현정순, 현덕순) 생존.
박순대	妻(일본인)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아들(박주식)·딸(박영미) 생존.
박은철	일본공산당 간부. 북한당국은 1973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박재호	父(조총련간부) 행방불명. 母·弟 생존.
박태중	母 일본 교토 거주.
배영삼	자살. 妻 영양실조로 사망. 아들(배정철, 배정광)·딸(배영화) 생존.
변주미	도로건설단으로 복송되었던 다른 교포들과 함께 수용.
서영철	출소.
서일선	父(조총련 중앙위 간부) 행방불명. 母·妹(서혜원, 서혜옥, 서혜숙) 생존.

성 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서정복	일본밀항후 복송. 간첩혐의로 수용.
성신희	父(조총련 상공인) 행방불명. 母·妹(성명화, 성경란, 성정화, 성정미) 생존.
성호일	父(조총련간부) 행방불명. 母(일본인) 영양실조로 사망. 弟(성의호, 성영호)·妹(성현숙, 성영숙) 생존.
손재식	출소.
손 정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弟(손구, 손령)·妹(손정옥) 생존.
손정의	妻·아들(손천기)·딸(손천혜) 생존. 일본에 있는 처가도움으로 출소.
송관호	조총련 니이가타출장소장. 북한당국은 1988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송귀익	노동교화소로 이동.
신 목	사망가능성.
신재화	북한당국은 1975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신학식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처(중국교포)·아들(신용범)·딸(신도연, 신채연, 신서연, 신수연) 생존.
안임준	조선신용조합협회 간부. 1990년 현재 생존
안이준	생존불명.
안홍갑	조총련간부.
안홍복	母(교도본부 여맹위원장) 체포후 행방불명. 조모·삼촌 일본 거주.
엄기성	父(조총련 교도본부 간부) 1975년 피검후 행방불명. 母·弟(엄기영) 생존.
오철신	교포2세.
오 현 (김시택)	1990년 현재 생존.
윤덕우	1976년 행방불명(조총련 교도본부 위원장). 妻(고명옥) 사망. 아들(윤상렬)·딸(윤영희, 윤정희) 생존.
윤신의	아들(윤충남, 윤충성) 생존.
이대철	이태출(女)일 가능성. 노동교양소로 이동.



성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이명수	조총련 교도본부 간부.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김조이) 생존.
이상천	1979년 행방불명(조총련 상공인). 妻(임춘산)·아들(이우, 이성우, 이천우) 생존.
이춘용	독신귀국. 후에 가족을 조국방문단으로 유인, 妻(이춘화)·아들(이세봉, 이철해, 이성해) 생존. 딸(이미화) 일본 동경 거주.
임팔구	妻(일본인)·아들(임덕원, 임화원) 생존.
장덕순	딸과 의사. 남편(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아들 3 생존.
장 덕	일본밀항후 복송.
장백일	父(조총련 교도본부 상공회) 1977년 행방불명. 母 생존.
장병렬	사망.
장혜영	부모 생존.
정길송	레슬링 세계선수권 보유자. 妻·아들 생존.
정우택	조총련 중앙외무 부부장. 노동교화소로 이동. 사망가능성.
정진일	일본 가라테 선수.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아들(정태봉) 생존.
정철진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아들(정일봉) 생존. 딸(정영미)은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조삼량	아사.
조성기	학자.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妻(일본인)·딸(조성미, 조성애) 생존.
조인철	대학재학중 피검.
조종갑	1990년 현재 생존.
조진환	父 행방불명.
조호평	북한당국은 국제사면위원회(AI) 조사방문시(1995. 4) 조호평일가가 1974. 10 탈출 도중 사살되었다고 답변.
천태중	아들(천홍의, 천홍태) 생존.
최경립	남편과 이혼후 수용소생활. 아들 1 생존.
최성우	김일성 생일축하단으로 복송. 父 행방불명. 兄·弟 생존.
최종원	일본인(오키나와 출신). 조총련 간부의 양자로 복송.

성 명	전직 직책 및 가족사항, 수감 이유, 수감 실태
최철호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孀(신수임)·弟(최성진, 최순희, 최정순)·아들 3·딸 1 생존.
한영덕	父 펠라그라병으로 사망. 母 생존.
한학수	1976년 행방불명(조총련 오오사카본부 교육회장). 妻 사망. 아들(한성민, 한성우) 1986년 2월 출소.
허정숙	父(역사학자) 사망. 母(일본인)·弟(허영숙) 생존.
홍만득	영양실조로 사망. 妻·아들(홍룡원)·딸(홍정미) 생존.
홍박선	妻(일본인). 출소.
홍충일	父(조총련 간부) 행방불명. 母·弟(홍충명, 홍충주, 홍충세)·妹(홍정미) 생존.
황정옥	妻 사망. 아들(황영수, 황영호) 생존.

\* 국제사면위원회(AI)의 보고서와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거 작성.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항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i>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i>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